서울특별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Seoul Welfare Facility Universal Design Guideline

경로당

SENIOR CENTERS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친화적 관점에서 서울시 경로당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여 공간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및 응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삽입된 그림 및 사진은 해당 가이드라인 항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현장 사례들입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경로당을 새롭게 계획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각 시설의 개보수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공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계획이 더해져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로당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ver **2.0**

서울특별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Seoul Welfare Facility Universal Design Guideline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고도화의 의의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적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감성을 디자인을 통해 배려하는 '디자인복지'를 향한 첫 걸음이다.

각기 다른 행태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이용하기 편리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이야말로 기능적 하드웨어의 제공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디자인시정의 창조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체, 행동, 상황별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한 배려로 모두(ALL)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 복지시설을 만들기위한 기본적 원칙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복지시설의 현장에서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10년 가까운시간이 흐르면서 복지시설과 건축에 대한 법규와 규정이 바뀌었고, 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담당자들도 단순히 최소기준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수준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태도변화를 보여왔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고도화를 통해 그동안 최소한으로 제시된 디자인 원칙들을 이용자 중심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더욱 상세하게 풀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서 소개 하는 디자인 원칙들이 복지시설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보수, 기능보강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건축 및 시공 관련업자들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용어의 표현 및 법규와의 연관성, 디자인 원칙의 근거와 배경, 관련 이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에 있어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복지환경 디자인이 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건축설계 및 시공 담당자와 복지시설의 담당자, 시설 이용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적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수준높은 복지시설로의 질적 성장과 발전, 사회적 약자의 편의와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본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각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신체, 행동, 상황별 차이를 배려하여 다양한 이용자 모두가 존중받는 이용자 친화적 서울시 복지시설 환경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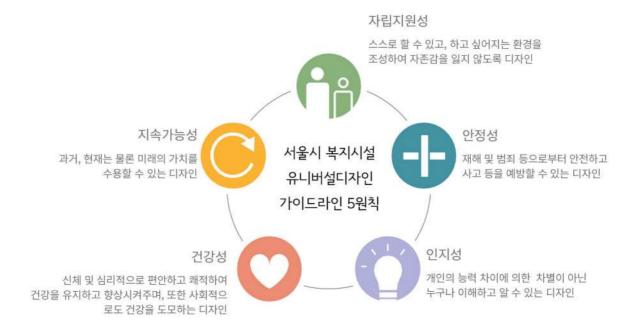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의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시설 전반이다.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원칙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이용자(EACH)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모두 (ALL)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 복지시설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지원성, 안전성, 인지성, 건강성, 지속가능성'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활용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과 원리를 적용하여 복지시설의 수준 향상
-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얼로 활용
- · 이용자 친화형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서울의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물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교육자료로 활용
- ·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시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 서울의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 디자인 원칙을 공유하는 도구로 활용
- ·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의 지침으로 활용

1. 들어가기

1. 시설의 이해	12
1.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12
2. 경로당의 정의 및 법적기준	14
2. 이용자의 이해	15
1. 노인의 특성	15
2.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디자인 고려사항	18
3. 기본방향	19
1. 비상시를 고려한 안전한 환경	19
2. 시설적 이미지를 최소화한 일상적 환경	19
3. 이용자를 고려한 쾌적한 지원 환경	20
4. 지역 연계 및 교류의 확대	20

2. 환경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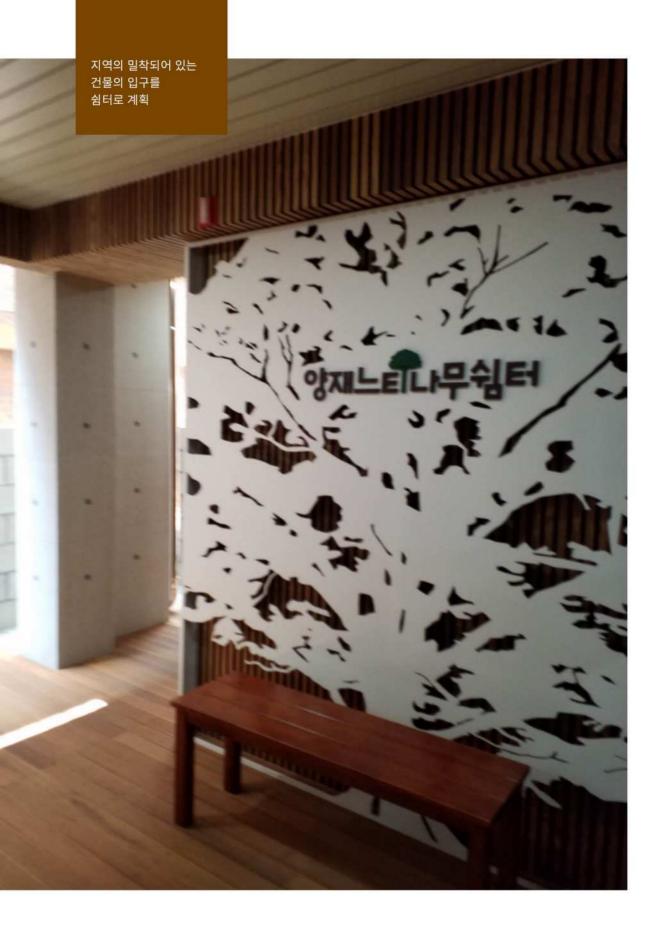
1. 외부 마감	24
2. 내부 마감	
2. 벽	32
3. 천장	34
3. 문과 창	37
1. 출입문	38
2. 실내 출입문	39
3. 창	43
4. 문 손잡이	44
4. 색채	45
5. 조명	51
6. 사인	53
7. 가구 및 수납공간	57
8. 기타	60
1. 콘센트, 스위치, 컨트롤	60
2. 채광, 환기	63

3. 외부 접근 공간

1.	주차장	66
2.	외부 출입구	67
3.	진입로	69
4.	경사로	70
5.	외부계단	73
4.	내부 진입 및 이동 공간	
1.	출입구/현관	76
	복도	79
3.	엘리베이터	81
4.	계단	84
5.	내부 기능별 공간	
1.	식당 및 주방	90
2.	공용공간	96
3.	프로그램실	97
4.	생활실	100
5.	화장실	102

6. 특화 공간

1.	특화 공간	110
2.	치유 공간	113
-	_	
부	록	
12		19921
1.	관련 법규 및 규정	118
2.	참고사례 및 인터뷰	140
3.	체크리스트	142



1 들어가기

1. 시설의 이해	12
1.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12
2. 경로당의 정의 및 법적기준	14
2. 이용자의 이해	15
1. 노인의 특성	15
2.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디자인 고려사항	18
3. 기본방향	19
1. 비상시를 고려한 안전한 환경	19
2. 시설적 이미지를 최소화한 일상적 환경	19
3. 이용자를 고려한 쾌적한 지원 환경	20
4. 지역 연계 및 교류의 확대	20

1 시설의 이해

1.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구 분	종 류	기능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복지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구분	종 류		기능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리 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한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재가노인 복지시설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 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국시시교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 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지원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하는 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32조, 제34조, 제26조, 제38조, 제39조의5, 제39조의19) (2019.01 개정)

2. 경로당의정의및법적기준

경로당이란?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시설의 규모

이용정원 20인 이상(읍,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시설 및 설비 기준

거실 또는 휴게실: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 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 시설
경로 당						1			1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2019. 09. 27 개정)

공간유형별 소요실구성

구분	구성
접근공간	진입로, 승하차공간, 주출입구
위생공간	화장실, 욕실
생활공간	거실 및 휴게실, 주방 및 식당,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이용자의 이해

노인의 특성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감각이 무뎌지며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등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노화에 따른 신체 및 심리적 변화의 특성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기능

- (1)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지구력과 동작의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 (2) 신체치수가 전체적으로 작아진다.
- (3) 하체근력의 저하로 넘어지고 골절이 되기 쉽다.
- (4) 골격이나 근력 등이 저하되고, 팔이나 쥐는 힘, 손가락의 힘이 약해진다.
- (5) 발목이 약해져 보폭이 좁아지고, 다리를 올리는 등의 힘이 약해진다.
- (6) 민첩성이 부족해진다.
- (7) 자세 유지력 및 균형감각이 떨어진다.
- (8) 치아가 약하게 되고, 소화기능이 떨어진다.
- (9)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냉·온열 등의 감각기능이 저하된다.

감각기능

- (1)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지구력과 동작의 범위가 줄어든다.
 - 동공의 광량조절이 저하되고, 특히 어두운 장소의 물체가 보기 어렵다.
 -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밝음을 느끼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순응시간의 증대 등이 발생한다.
 - 초점조절능력이 저하되고, 노안이 진행된다.
 - 수정체의 혼탁이나 황변화가 진행되고, 수정체 내부의 빛이 산란하고, 색차의 식별능력이 저하 된다. 특히 윗 방향의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
- (2) 색상은 특히 중간색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다.
- (3) 청력이 약해진다.
- (4) 평형감각이 저하된다.
- (5) 후각이 약해진다.
- (6) 촉각이 약해진다.
- (7) 냉, 온열 감각 능력이 둔해진다.
- (8) 기타
 - 감각기능이 약해지게 되므로 화재 감지기나 가스 누출 감지기. 소화 장치 등을 부엌이나 노인실에 설치한다.
 - 비상용의 통보장치를 화장실, 욕실, 요양실 등에 설치하고, 비상버튼이 손에 닿는 범위와 넘어 졌을 때 누를 수 있는 장소에도 설치한다.
 - 화장실의 문은 미닫이문 외에 밖으로 열리는 문, 욕실의 문은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하여 비상시에는 외부에서도 열 수 있도록 한다.

생리적 기능

- (1) 중추신경이 약해지게 되므로 수면시간이 짧아지고, 야간에 잠을 자주 깨게 되며 낮에도 졸게 된다.
- (2) 배뇨횟수가 많아지게 되며, 방광 괄약근 기능의 저하나 요실금이 생긴다.
- (3) 생리기능이 종합적으로 저하된다.

심리적 특성

- (1) 반응시간이 느려지고 주의력, 집중력이 저하되며 복잡한 정보의 검색이 곤란해진다.
- (2) 과거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다.
- (3)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 (4) 감정의 컨트롤이 어렵게 된다.
- (5) 흥미의 대상이 자신에게 가까운 것에 한정된다.
- (6) 기억력이 감퇴되며 무력감, 좌절감, 우울증에 쉽게 빠져든다.

사회적 기능

- (1) 여가시간이 많아지며 주거지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 (2) 이웃과의 교류가 확대되기 어렵다.
- (3) 직장으로부터 은퇴, 신체적 장애로 인한 움직임의 제한,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의 헤어짐이 심리적, 감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소화흡수기능

- (1) 배고픔, 갈증감퇴, 치아결손, 소화기능, 기초대사량 감소로 인해 소화기능이 저하된다.
- (2) 구갈반응 감퇴, 소변량 등가, 탈수현상야뇨 횟수 증가, 변비 등 배설능력 조절이 어렵게 된다.

근골격기능

- (1) 근력 기능이 저하되면서 지지능력, 집기능력, 민첩성, 지구력 등이 떨어지고 장시간 서 있기 힘들어진다.
- (2) 뼈가 약화되면서 허리굽음, 신장감소, 관절경직 및 기현, 관절염, 보행불편, 골다공증 등의 신체 변화가 나타나며,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진다.



여가시간이 길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노인은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기 쉬움.

시각기능

- (1) 동공의 광량 조절이 저하되고, 특히 어두운 장소의 물체 인지가 어렵다.
- (2)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밝음을 느끼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순응 시간이 증대된다.
- (3) 수정체의 혼탁이나 황변화가 진행되어 색채의 식별 능력이 저하된다.
- (4) 수정체의 유연성이 저하되면서 눈 근육이 잘 수축되지 않아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
- (5) 청색, 녹색과 같은 한색 계열의 색상과 유사색상들 간의 구별이 힘들어진다.
- (6) 시야의 감소로 주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범위가 좁아진다.
- (7) 백내장, 녹내장, 단차이 구별능력 저하, 유사색 변별력 감소, 야맹증, 가시거리 감소 등이 나타난다.



같은 색이라도 젊은 사람(왼쪽)과 80대 노인(오른쪽)은 다르게 보임

청각기능

- (1) 나이가 들면서 귀의 고막이 얇아지고 딱딱해지면서 소리 전달이 어려워진다.
- (2) 개인차가 있으나, 들리는 정도가 저하되고 난청이 되는 경우가 많다.
- (3) 빠른 속도의 말이나 불명료한 발음에 의한 말, 소음 속에서의 말을 듣는 것이 힘들어진다.
- (4) 높은 음 보다는 낮은 음을 상대적으로 더 잘 인식한다.
- (5) 소리를 듣기 어렵게 되면서 소리가 나는 방향이나 위치를 알기 어렵다.
- (6) 시야의 감소로 주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범위가 좁아진다.

촉각기능

- (1)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재질을 식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 (2) 압력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 눌러서 획득하는 방식의 정보를 인식하기 어렵다.
- (3) 열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 높은 온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화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 (4) 통증이나 주위 온도에 덜 민감해져 추운 겨울에는 체온 저하의 가능성이 있다.

2. 노인의 신체적변화에 따른 디자인 고려사항

기능	노인의주된신체적변화	디자인 고려사항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물체를 인지하기 어려움	물체인지에 용이하도록 배경과 색채, 재질에 적절한 대비효과를 줄 것		
시각	지나치게 밝은 빛이나 표면에 눈이 잘 적응하지 못함	눈부심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표면마감을 할 것		
	터널시각현상으로 주변시야를 상실함	중요한 정보를 좁아진 시야 내에 배치할 것		
청각	보통의 볼륨으로 소리를 인식하기 어려움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할 것		
24	노인성 난청으로 복잡한 소음 속에서 소리를 잘 구별 못 함	소리가 나는 곳을 파악하기 쉽도록 소리와 시각적 정보를 함께 제공할 것		
	작고 부드러운 물체를 잡고 있기 어려움	촉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물체의 크기, 형태 등에서 뚜렷이 차이가 나도록 할 것		
촉각	누른 힘을 감지하고 느끼기 어려움	눌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한 피드백을 줄 것		
	열에 의한 자극을 감지하기 어려움	뜨거운 것을 사용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열에 의한 부상을 방지할 것		
	손을 뻗어도 물건을 수납하기가 곤란함	손이 닿는 범위 내에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가구 등을 설계할 것		
신체 및	손으로 물체를 돌리고 비틀기가 어려움	돌리고 비트는 행동을 최소화하고 손잡이는 레버형이나 누름식 버튼을 사용함		
동작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기 어려움	구부리거나 쪼그리지 않도록 작업대 등을 설계함		
	자세 유지 및 균형 감각이 저하됨	필요한 곳의 바닥을 미끄럼 방지 처리할 것		
인지	학습능력이 저하됨	정보의 반복으로 학습이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능력	상황에 대한 반응능력이 쇠퇴함	반응시간을 길게 줄 것		

기본방향

1. 비상시를 고려한 안전한 환경

경로당은 지역에 밀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관리자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안전 설비 계획에 신중해야 한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고령장애 및 초고령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일상 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행 및 일상적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화재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여 피난통로와 임시대피장소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층마다 직접 연결되는 발코니를 계획할 경우, 일상시에는 자연요소 및 외부환경과의 교류 장소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대피장소 및 피난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안전 관련 정보의 명료 하고 신속한 전달을 위한 사인 시스템의 계획, 명확한 동선의 안내, 장애물 없는 보행로 등의 계획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2. 시설적 이미지를 최소화한 일상적 환경

경로당은 위치 및 규모면에서 지역밀착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지닐 수 밖에 없는 부정적 한계 요인을 최소화하고, 인간적인 스케일의 친숙한 환경과 지역적인 정서를 반영한 복합적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일상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환경제어능력과 활동력이 떨어지는 노인 에게는 대규모의 거대한 공간보다는 친밀감 있고 인간적인 스케일의 소규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이다.

노인시설은 노인을 위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 및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시설 로서의 기능도 담당한다. 따라서, 일상환경과 지역정서를 고려하여 친근한 휴식공간을 시설과 접목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경로당은 지역의 욕구와 특수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게 결정 되는 지역밀착시설이므로 기능과 성격에 따라 획일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소규모 복합시설로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층이 변화되기 때문에 공간구성과 마감재의 선택을 신중하게 고려 하고, 경로당이 위치한 장소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3. 이용자를 고려한 쾌적한 지원 환경

- 경로당의 주된 이용자는 지역사회의 노인들로, 다양한 연령대와 신체특성을 지닌다. 갈수록 고령 장애와 초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이용시 이용자가 쉽게 이동 및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일상적 환경에서도 동기유발, 감각기능의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자연요소의 도입과 연계, 친숙한 물품의 배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정보제공 등은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사인시스템은 이용자의 지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하며, 통일성을 갖추면서 명확한 시각적 대비를 이룬 색채계획을 통해 이용자의 공간 인지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이 외에도 채광, 환기, 통풍 등의 환경요소를 극대화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이용자가 머무를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지역 연계 및 교류의 확대

경로당은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과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연계와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노인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공간 및 환경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로당의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원, 카페, 식당 등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시, 장터, 공연 등 다양한 지역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경로당은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경직된 디자인보다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분위기를 압도 하는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며,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마감재와 색채로 외관을 디자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환경 요소

1. 외부 마감	24
2. 내부 마감	26
1. 바닥	28
2. 벽	32
3. 천장	34
3. 문과 창	37
1. 출입문	38
2. 실내 출입문	39
3. 창	43
4. 문 손잡이	44
4. 색채	45
5. 조명	51
6. 사인	53
7. 가구 및 수납공간	57
8. 기타	60
1. 콘센트, 스위치, 컨트롤	60
2. 채광, 환기	63

1 외부 마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색채를 강조한 외부마감

기본 원칙

- · 건물 외부의 마감은 심미적인 요소, 기능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 ·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시설 같은 느낌을 주는 외부 마감재는 피한다.
- · 마감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공간에 사용하여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보행로

• 모든 보행로는 휠체어와 보행 보조기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표면이 단단하고 요철없이 매끄럽게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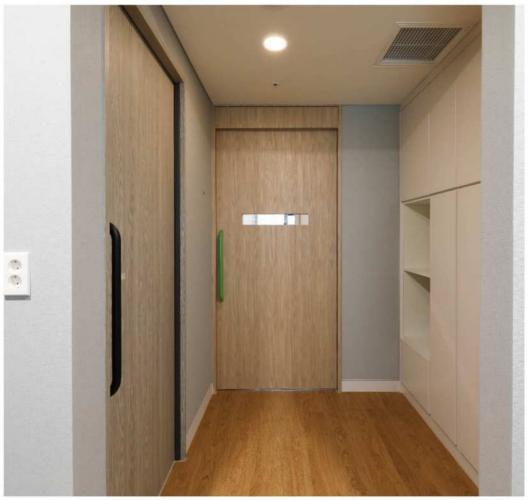
소재의 종류와 기능

- · 건물 외관에 병원이나 관공서 등과 같은 시설 느낌의 마감재 사용이나 디자인은 피한다.
- ㆍ 지역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압도하는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마감재 와 색채로 외관을 디자인한다.
- ㆍ 자갈돌, 흙, 모래 등 고르지 못한 소재는 바닥 마감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 · 바닥이 젖거나 말라 있을 때를 모두 고려하여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한다.
- ·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오염 및 단열에 강하며 광택이 적은 마감재를 적용한다.
- · 한낮의 햇빛 또는 가로등 조명의 빛 반사로 눈부심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한다.
- · 바닥 표면에는 시각적 혼란을 줄 수 있는 강한 패턴은 적용하지 않는다. (예, 대비가 강한을 사용할 경우, 계단으로 인지할 수 있음)

유지 및 관리

- · 깨지고 울퉁불퉁한 표면, 느슨해진 이음부 등은 규칙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를 적용한다.

2 내부 마감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한 내부 마감

기본 원칙

-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친근한 마감재로 계획한다.
- · 단조로운 구성의 반복보다는 차별화된 컬러 및 재료, 공간 계획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전달 방법을 제공한다.
- · 감성적, 자연친화적 색채의 사용 및 기능적이고 친근감 있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일반

-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공간을 구분하고 목재나 패브릭 등 따뜻하고 친근한 마감재로 계획한다.
- · 규모면에서 층별로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층별로 통일되는 부분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 관리부문과, 화장실, 수직교통 등은 알기 쉽고 접근하기 유리한 위치에 통일시키고, 각 층별 마감재, 컬러, 휴게공간 등은 이용자의 장애특성 및 기능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 · 단조로운 구성의 반복보다는 차별화된 컬러 및 재료, 공간 등을 통해 다양한 감각(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ㆍ사인에 의존하기보다는 투과성 있는 마감을 통해 내부장치 및 활동상황이 이해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 면역력이 약한 고령의 노인들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마감을 적용한다.
- · 항균 마감재나 목재와 같은 친환경적인 재료를 마감재로 선택한다.
- · 인체에 무해한 천연소재를 선택하고, 시공에 사용하는 접착제도 가능한 한 무해한 성분으로 적용한다.
- · 감성적, 자연친화적 색채의 사용 및 기능적이고 친숙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 · 마감재의 선택 시 바닥과 벽에 단차가 발생할 경우 색채대비가 명확한 재료를 선택한다.
- · 시설적이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보다는 목재, 벽돌, 흙, 패브릭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 · 화재에 대비하여 불연, 난연 재료를 선택한다.
- · 마감재 선택 시에는 단가 뿐만 아니라 내구성을 함께 고려한다.
- · 보행보조기, 휠체어 등의 사용이 잦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 쉽게 더럽혀지지 않으며, 청소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한다.
- · 활동하기에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 · 뛰거나 걷다가 넘어져도 부상이 적도록 적정한 탄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방음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광택이 심하고 눈부심이 강한 재료는 선택하지 않는다.
- · 시각적으로 혼란을 주는 복잡한 무늬는 피한다.



단차없는 바닥과 가구,벽의 색상과 재료를 부딪힘이 없도록 유도

1. 바닥

일반

- · 미끄럼 저항(slip resistance)은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바닥이 젖었을 때나 마른 상태일 때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매끄러운 표면일수록 미끄럼 저항이 약해지고, 거친 표면일수록 저항이 높아져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우수하다. 따라서,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적정한 탄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 바닥에 적용된 소재와 마감이 주변 인접한 공간의 바닥 마감과 다를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높아 지기 때문에 소재와 마감의 변화는 이동의 중심선을 벗어나 가장자리에 적용한다.
- · 바닥 마감은 바닥면이 단단하고 평평하게 계획하며, 방향성이 없는 소재를 적용한다. (파일 (pile)이 긴 카 페트와 같이 방향성을 가진 바닥 마감재는 휠체어 등의 이동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 · 카페트를 사용할 경우, 밑깔개(underlay), 파일(pile)의 높이와 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ㆍ 바닥, 벽, 천장 간의 시각적 대비는 가시성, 방향성, 공간인지, 표면/형태/장애물 인지에 도움을 주어 공간의 규모와 형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 ㆍ 광택이 있고 눈부심이 강한 재료는 바닥이 젖은 것처럼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단, 바닥면의 작은 디테일에 포인트로는 활용할 수 있다.
- ㆍ작은 물체나 표면은 명료성을 높이기 위해 크고 넓은 공간에 비해 시각적 대비를 더 강하게 적용 해야 한다.
- ㆍ바닥에 크고 강한 패턴 혹은 복잡한 무늬는 이용자가 장애물 또는 단차로 인지하는 등 시각적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피한다. (예, 강한 대비로 구성된 선)
- · 두 가지 이상의 바닥 마감재를 섞어서 사용할 경우, 마감재 간의 단차는 없어야 한다.
- · 바닥 마감재의 시각적 대비를 적용할 때는 단차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 · 목재, 세라믹 타일, 돌, 금속, 유리 등 단단한 마감재는 소리의 반향을 증가시키고, 카페트, 비닐, 고무, 코르크 등 부드러운 소재는 소리를 흡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간에 적용 시 최적의 음향 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 이용자가 건물 내에서 보다 쉽게 서로 다른 공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간별로 대비되는 음향 성능을 지닌 소재를 적용한다. (예, 목재와 카페트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공간 변화에 대한 청각 정보를 제공한다)
- · 보행 보조기, 휠체어, 환자 운반용 침대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ㆍ 바닥은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오염 시 쉽고 빠르게 세척이 가능하도록 하다.
- · 친환경적이고 방염기능이 적용된 마감재를 사용한다.

2. 벽

재료와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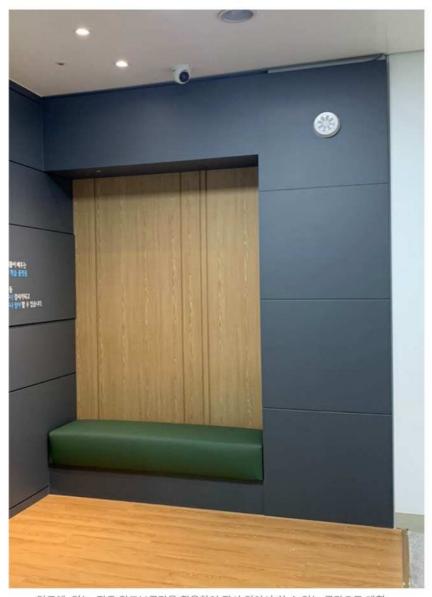
- · 벽에 몸을 기대거나 손을 짚는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더러워지지 않고 청소하기 쉬운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한다.
- · 광택이 있는 소재는 눈부심과 빛반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 · 방염기능을 지닌 소재를 선택한다.

재료와 마감

- · 따뜻하고 차분한 색채로 마감하되, 층과 실의 성격 등 공간에 따라 변화를 주도록 한다.
- · 가장 많이 시야에 들어오는 배경은 벽이기 때문에, 주조색은 차분한 색채로 선택하고 규칙적이고 연속된 패턴은 이용자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 · 강한 패턴은 시선 분산과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 · 바닥의 단차 또는 건물 내 영역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벽면에 다른 색채를 적용하여 공간을 구 분할 수 있다.
- · 밝은 색상의 대비로 이루어진 선은 동선을 유도하고 사인, 길찾기 시스템 등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 · 벽에 창문이 있는 경우, 빛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한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 · 벽체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 바닥높이에서 850-1000mm, 1400-1600mm 두 군데에 배경과 대비가 되는 색채나 마감으로 마크를 제공한다. 이때, 두가지 톤으로 마크를 구성하면 가시성 을 더욱 높일 수 있다.
- ㆍ 색채나 패턴은 일률적이지 않도록 활동 단위별, 층별, 실의 성격별 등 공간에 따라 변화를 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차분한 색채의 벽에 나무재질의 문이나 가구로 포인트를 줄 수 있다.
- · 바닥, 벽, 문 테두리가 쉽게 구분되도록 대비되는 색상의 몰딩을 설치한다.

[벽 마감재 예시]

재료의 유형	특징	적용공간
친환경벽지	유해물질 분해, 인체에 무해함, 탈취성	생활공간 전반
천연벽지	인체에 무해함, 탈취성, 항균성, 함유성분에 따른 기능성 (바이오 원적외선, 습도조절, 피톤치드 방출)	경찰하신 언린
인테리어 타일 (인조대리석)	내오염성, 유지관리가 용이함	현관
우드패널	친환경 제품, 방염, 벽지보다 내구성 및 내오염성 좋음, 특수코팅 처리로 유지관리 용이	생활공간 (거실 등)
타일 (기능성 타일)	천연소재(흙), 유해물질 감소, 항균성, 항취성, 습도조절	생활공간 (현관, 거실 등)
규조토 보드	불연건재, 습도조절, 탈취, 항균, 실내공기정화, 차음성	생활공간 전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입구에 있는 작은 알코브공간을 활용하여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바닥 마감재 예시]

재료의 유형	특징	적용공간
마모륨	친환경 천연재료,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내구성, 방음, 충격흡수, 방습효과, 항균성, 난연성, 다양한 색상	
무석면 타일	불연재(소방기준에 적합), 경제적, 내마모성,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다양한 색상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전도성 타일, 대전방지타일	대전방지성, 내약품성, 내스크레치성, 치수안정성 등 기능이 다양함, 내오염성,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천연대리석 및 카펫무늬 효과	
차음시트	고탄성층의 충격흡수 구조로 보행감 및 안정성 우수함, 내구성, 항균성, 고후도 제품으로 소음감소 효과,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함, 고하중물의 이동에 강함	생활공간 전반,
고탄성 바닥 시트	충격흡수 구조로 보행감 및 안전성 우수함, 내소음성, 탄성,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 고하중물의 이동에 강함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강화마루	친환경제품, 기능성(살균/항균 작용 등), 고온, 습기에 강함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친환경 마루	천연원료(옥수수, PLA(생분해성 섬유), 황토, 목분, 천연석, 구연산 등), 무해성, 내소음성, 내마모성, 열전도율 좋음 (스팀청소, 왁스 사용불가)	
코르크 마루	자연친화적 제품이며 인체에 무해함, 충격흡수 구조로 보행감 및 안전성 우수함, 내구성, 항균성, 내소음성	생활공간 전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온돌 마루	얇은 합판 무늬목을 봍인 합판마루, 선명한 나뭇결과 질감으로 원목에 가까운 이미지 연출, 바닥접착시공으로 난방효과 높음, 뒤틀림과 변형 최소, 표면 내구성 약함, 철거시 추가비용 발생	

3. 천장

일반

- ·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실 천장은 감성적인 디자인과 색채로 계획한다.
- · 주조색은 밝고 차분한 색채로 선택하고 나무재질의 마감 등으로 포인트를 준다.
- ㆍ 천장은 밝은 색채로 계획하여 빛이 반사되고 고르게 바닥과 벽면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한다.





좌) 밝고 차분한 톤의 색채로 계획 하고, 따뜻한 느낌 의 나무 소재로 마 감한 천장

우) 밝은 색상의 마감재를사용하고, 공간 전체에 빛이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계획한사례

[천장 마감재 예시]

재료의 유형	특징	적용공간
텍스	불연 천장판, 무해성, 단열성, 경량성, 흡음성, 기능성, 유지보수 용이함. (유해물질 분해성능을 가진 특수도료 도장 마감)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SMC 천장재	친환경소재, 준불연재, 내구성, 내수성, 내습성, 항균성, 유지보수 용이함	화장실, 욕실
금속 천장재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가볍고 녹슬지 않는 내구성, 깨끗한 표면 마감 (알루미늄, DMC 천장재)	생활공간 전반
규조토 보드	불연 건재, 습도조절, 탈취, 항균, 실내공기 정화, 차음성	생활공간 (식당, 거실, 방)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석고보드/ 비닐 페인트 또는 천장 지	내열성, 내구성 우수, 벽, 칸막이, 천장 등에 주로 시공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도장재 예시]

재료의 유형	특징	적용공간
친환경 페인트	친환경 제품, 인체에 무해함, 내수성, 내일카리성, 내세척성, 항균성, 유지관리 용이	
규조토	친환경 제품, 불연성, 습도조절, 단열, 방음효과, 항균성, 탈취효과 기능성(포름알데히드, VOC(휘발성유기화합물) 흡착분해, CO2 흡 수, 음이온 방출 등)	
천연칠	유기농 원료 사용, 인체에 무해함, 다양한 색상, 목재 수명 연장	생활공간,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수성페인트	냄새가 적고 빨리 건조, 저렴한 가격, 조색 및 시공의 간편함, 오염이 쉽고 수명이 짧음, 접착력과 광택 약함	
비닐페인트	목재, 콘크리트 등 모든 재료에 도장이 가능한 내부용 수성도료, 은폐력, 평활성, 작업성이 우수하고 도장 및 건조시 냄새 거의 없음, 수성페인트보다 입자 곱고 무광택 표면 마감	

[타일 예시]

재료의 유형	특징	적용공간
세라믹 타일	화산재를 이용한 세라믹 제품, 탈취효과, 습도조절, 항균, 유해물질 흡착, 유지보수 어려움, 내구성 낮음	화장실, 욕실, 청소 및 세탁실, 조리실 등
황토 타일	원적외선 방사, 탈취, 공기정화, 항균, 습도조절, 유지관리 용이	
인조대리석 타일	다양한 색상, 변색 방지, 합리적인 가격, 시공의 간편함	
자기질타일	1,250도에서 구워 온도변화에 강하고 견고함, 우수한 내구성, 강도/경도가 우수하여 바닥과 외부벽면에 주로 사용, 방수성 뛰어남	
	폴리싱 타일 – 표면에 광택이 있고 타일 이음새가 없어 청소와 시공이 간편함, 충격흡수율이 낮아 파손위험이 높고 물 묻을 경우 표면이 미끄러움	
	포세린 타일 – 견고하고 내구성 우수, 본래 색상 오래 유지함,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 연출 가능, 표면이 거칠고 타일 이음새 오염이 발생함	

[흡음재 예시]

재료의 유형	특징	적용공간
차음재	친환경 제품(황토, 맥반석 등을 첨가한 제품도 있음), 원적외선 방출, 저후도(1~4T) 고성능, 시공이 용이함	
나무섬유 흡음재목 /목모보드	흡음성, 난열성, 단열성, 항균성, 내구성, 내습성, 시공이 용이함, 변형이 적음	
아트보드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제조, 인체에 무해함, 곡면 및 원형기둥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시공이 용이함, 형태 안전성 높음, 다양한 색상, 재사용 가능, 연소시 유독가스 발생하지 않음	방음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실, 강당 등
천연면보드 / 후 레쉬보드	천연섬유 면사와 독성이 없는 팽창 퍼라이트로 제작, 부드러운 질감과 다양한 색상, 불연성, 흡음성, 보온성, 보냉성, 단열성, 무해성, 사용시 안전성 시공이 용이함	
흡음판넬	친환경성, 유지관리가 용이함, 항균성, 방충성	

문과 창



넓은 유리창으로 내외부 공간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계획한 출입문

기본 원칙

- · 문과 창은 이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출입구의 문에 기관명을 명시하고, 시각적으로 시설의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감을 준다.
- · 문과 주변 벽면은 명확한 시각적 대비를 이루도록 색채 및 재료를 선택한다.

1. 출입문

일반

- · 문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있는 경우, 동선에 방해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출입문은 가능한 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도록 설치한다.
- · 문 하단부는 휠체어 발판이 부딪혀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한 소재를 적용한다.
- · 주 출입문의 유효 폭은 900mm 이상으로 하되, 가급적 1200mm 이상을 권장한다.
- · 문과 창호는 시설적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 따뜻한 느낌의 목재를 가능한 한 선택한다.
- ·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명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안전

- · 무겁지 않으며, 천천히 닫히도록 도어체크를 설치한다. 특히, 실내 출입문보다 무거운 현관문이나 주출입구의 문에는 반드시 도어 체크를 설치해야 한다.
- · 출입구 문 안팎으로 열고 닫을 때 다른 이용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 하다.
- · 노인이 사용하는 실은 여닫이문 보다는 간단한 조작이 가능한 미닫이문을 설치한다. 미닫이문에는 안전장치(댐퍼-용수철이나 고무 등의 탄성체를 이용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약화시키는 장치)를 적용한다.

시각적 대비

- · 유리문을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해 눈높이에 명확한 시각적 표시한다.
- · 문이 유리이거나 주변의 벽과 유사한 재질로 계획된 경우, 대비되는 색채로 강조하거나 장식적인 요소 등으로 구분을 한다.
- · 문은 시각적으로 주변과 대비가 명확하도록 색채와 재질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투시창

· 모든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투시창을 설치하여 문 건너편의 상대방을 확인하고 내외부 공간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실내출입문

아저

- · 노인이 사용하는 실은 여닫이문 대신, 간단한 조작이 가능한 미닫이문을 설치한다.
- · 무겁지 않으며, 천천히 닫히도록 도어체크를 설치한다.
- · 실내 출입문의 바닥면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한다.
- · 안전을 위한 손끼임 방지 보호대를 설치한다.
- · 비상시 대피 등 특수하게 방 바깥쪽으로 문이 열리도록 해야 할 경우, 타인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문 주변에 가로대 등의 안전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의 경우, 노인이 서서 문을 열 때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문 손잡이 옆 벽면에 수직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 벽과 대비되는 색채, 가벼운 소재의 경량 출입문을 설치한다.

투시창

- · 실내 출입문의 경우, 내부 투시가 가능한 유리창이 있는 문을 설치한다. 유리창의 높이는 휠체어에 않은 노인 이용자도 볼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최소 500mm 이상으로 설치하되,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 · 보안, 프라이버시, 및 등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문에는 투시창을 설치한다.
-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로 투시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문 위쪽에 가로로 된 채광창 (transom)을 설치하여 건너편 사람의 움직임 정도는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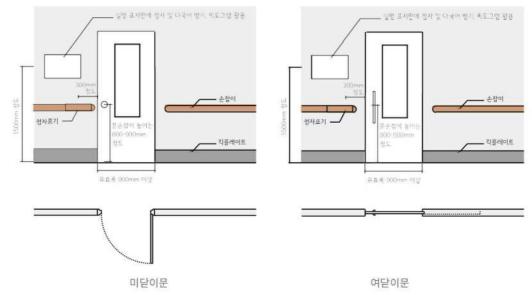
- · 유효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실내 중문은 3연동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유효폭의 활용성을 높이고, 오픈형이 아닌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고시형 타입으로 적용한다. (고시형: 문의 하부를 프레임 처리해 하단을 가린 디자인 / 오픈형 : 하부 가림막이 없고 전면이 트여 있어 시원한 개방감을 주는 디자인)
- · 중문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대피 안내사인과 축광시트를 적용한다.

[문의 종류에 따른 설계 기준]





투시창으로 실 내부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한 문



알아두세요!

유효폭은 이용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의 가로 길이를 말한다.

· 문 설계시 유효폭의 치수는 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한다.

여닫이문: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의 폭으로, 열린 문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닫이문: 문 열어 놓았을 때 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완전히

개방된 폭을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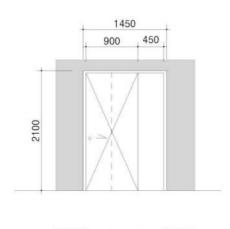
양여닫이문: 주로 사용하는 한쪽 문만 열었을 때에 개방되는 폭을 측정한다.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16)

[다양한 문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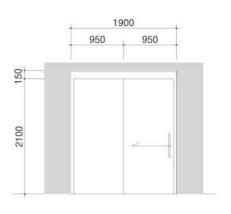
미닫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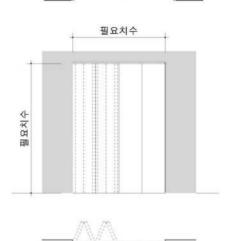
슬라이딩 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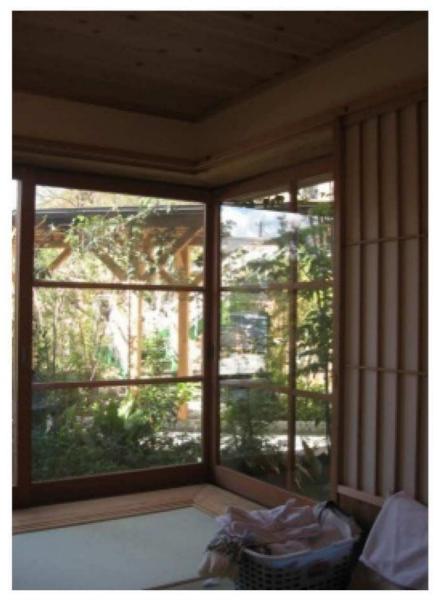




접이식 도어







녹색과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집과 같은 소규모의 공간구성으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공간

3. 창

일반

- · 자연환기 및 통풍, 자연채광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위치와 크기를 계획한다.
- ㆍ 창은 적은 힘으로도 개폐하기 쉽도록 하되, 긴급상황 이외에는 바깥으로 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열리는 폭은 100mm 정도로 조절한다.
- 실내에 유입되는 햇볕을 조절하기 위해 커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커튼 대신 한지를 바른 창을 사용하여 친숙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차양시설, 루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겨울철의 열손실 방지와 소음차단을 위해 2중 단열창을 선택한다.
- · 여름철에 벌레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충망을 설치하되, 반드시 난간을 함께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한다.
- ㆍ 창 밖으로 떨어지는 물건이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화단을 조성하거나 화분을 두어 창 주변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차단한다.
- · 휠체어에 앉아서도 외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창턱을 낮추어 계획한다.

4. 문 손잡이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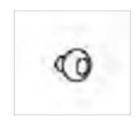
- · 문 손잡이의 종류는 손의 크기나 악력에 상관없이 열기 쉬운 레버형 혹은 일자형으로 설치하며, 청소 관리실이나 조리실, 의료실 등 위생이 중요한 경우는 누름식으로 설치한다.
- · 문 손잡이는 노인이 잡고 열고 닫기 쉬운 형상과 크기, 바닥으로부터 850-1200mm 높이로 설치 하다.
- ㆍ문 손잡이는 손을 걸거나 끼울 수 있는 바형을 설치한다. 문에 매립된 형태, 구형으로 돌출된 형태는 잡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 일자형 손잡이의 경우, 잡기 편하도록 600mm 이상의 충분한 길이로 계획한다.



문과 손잡이에 배경과 대비되는 색채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공간 인지에 도움을 주는 색채계획

[문 손잡이의 종류]

문손잡이의 종류는 손의 크기나 악력에 상관없이 열기 쉬운 레버형 혹은 일자형으로 설치하며, 청소관리 실이나 조리실, 의료실 등 위생이 중요한 경우 누름식을 권장한다. 단, 노브형은 모든 문에 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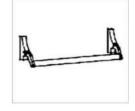


노브형 (모든 문에 지양)



[권장]레버형

실내 출입문, 직원관 리 공간 등에 적용



누름형

청소관리공간, 조리실 등에 적용



일자형

실내 출입문, 직원관 리 공간 등에 적용

색채



벽면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원색의 대비가 강한 색이 적용된 문

기본 원칙

- · 일관된 색이나 패턴을 사용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정보 전달 방법을 계획한다.
- · 전체 공간이 가지는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색채를 계획한다.
- · 각 색상이 제공하는 심리적 이미지, 온도감, 강약, 시간감 등에 대한 효과를 고려한다.

일바

- · 일관된 색이나 패턴을 사용하여 통일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뜨겁다, 위험하다'를, '파란색은 차갑다'를 의미하는 것처럼, 일관된 색을 사용하여 통일감 있는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색이 전달하는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 색채 조합은 명도 2단계 이상으로 계획하여 저시력 이용자가 쉽게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백내장 등의 이유로 색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색채계획을 한다.
- · 시설 전체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 공간이 가진 기능과 위치에 적절하게 층별로 강조색을 선정 하여 통일성 있게 적용한다.
- · 예술성이 강조되거나 개인의 선입견이나 취향에 따라 건물, 설비, 집기 등의 색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 전체 공간의 기능적 분류에 대응하여 영역별로 대표 색상을 선택하고, 가구, 비품에 이르는 상세한 부분도 고려한다.
- · 자연색 또는 생동감 있는 색채를 적용하여 컬러테라피 효과를 강조한다.
- · 색이 가진 확장, 수축 등의 성격을 활용하여 공간감을 조절한다.
- · 색이 가진 상징, 식별, 안전기능을 고려하여 유대감을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계획한다.



남녀화장실의 문을 각기 다른 색으로 띠를 둘러 이용자가 쉽게 공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유도한 색채계획

알아두세요! 실내공간의 색채

바닥 - 실내 공간의 바닥은 기본적으로 수평을 이루고 평평해야 하나 단차를 두지 않고 다른 공간과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색채, 재료, 패턴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벽 - 높이에 따라 이용자의 시각과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벽면에 강한 색채나 패턴을 적용하면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느낌을 부여할 수 있다.

천장 - 천장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공간의 소리, 빛, 열을 반사 및 흡수하여 그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실내공간에서 색채는 그 공간을 개성있게 표현하거나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특정한 공간의 이미지는 색채와 재료, 조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를 별개로 고려 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색채는 한정된 공간을 지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밝고 연한 색은 확장과 후퇴, 어둡고 무거운 색은 수축되거나 진출된 느낌을 전달한다.

실내공간의 벽, 바닥, 천장 등은 면적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색채가 전달하는 자극이 상당하며, 명도와 채도를 포함한 톤을 조절하는 것이 색상을 조절하는 것보다 더 필수적이다. 명도는 밝고 어두움의 차이를 나타내고, 채도는 색의 순수하고 탁한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공간의 이미지 에 맞는 색상과 명도, 채도의 대비와 조화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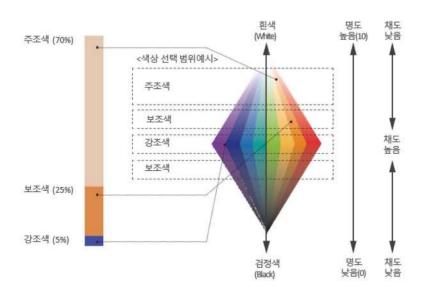
대비효과는 색채, 재료, 마감, 조명, 질감, 패턴 등 여러 가지의 조합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색채의 대비는 색상대비, 명도대비, 한난대비, 보색대비, 동시대비, 채도대비, 면적대비의 일곱 가지로 분류된다. 단, 색채대비는 재료와 마감, 빛환경 등에 따라서 또 다른 효과를 드러내기 때문에 실제 공간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대비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색채, 조명, 재료와 마감의 특성과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색상대비 – 서로 다른 색채 간의 차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색상대비가 강할수록 화려하고 시각적인 자극이 강하게 전달된다.

명도대비 – 색채가 지닌 밝고 어두운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데, 가장 밝은 색은 흰색, 가장 어두운 색은 검정으로 명도대비가 강할수록 사물의 형태와 크기, 위치 등을 명확하게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난대비 - 따뜻하거나 차갑게 느껴지는 색온도의 차이로, 붉고 노란 색일수록 따뜻한 느낌을 주고, 푸르거나 초록에 가까운 색일수록 차가운 색에 해당한다. 한난대비는 순색일 경우에 그 효과가 가장 크며, 차가운 색은 멀리 있는 물체로, 따뜻한 색은 가까이 있는 물체로 인식되어 공간 또는 평면상의 원근감을 강조하기도 한다.

[색상선택의 원리 예시]





그래픽 처리, 또는 영역별로 특징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알기 쉽게 계획한 공간

보색대비 – 빨강과 초록, 노랑과 보라, 파랑과 주황 등 색상환의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 두 색의 관계로 표현되며, 서로의 색을 방해하지 않고 가장 순수하고 생기있게 색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서로의 색상을 안정되어 보이게 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지닌다.

동시대비 – 특정한 색이 배경색에 따라서 실제색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색을 더 밝게 하거나 더 어둡게, 혹은 순수하거나 탁하고 흐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채도대비 – 색채가 지닌 순수한 정도의 차이를 말하며, 채도의 차이를 통해 순수한 색은 더 선명 하고 깨끗하게 보이며 탁하고 어두운 색은 더욱 흐릿하고 탁하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

면적대비 - 색채가 적용된 면적의 비율에 따른 차이를 말하며, 같은 색이라도 넓은 면적에 사용 할수록 더 선명하고 강한 인상을 주며 좁은 면적에 사용하면 더 어둡게 보이는 효과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조화로운 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채도와 명도가 낮은 색은 넓은 면적에, 채도와 명도가 높은 색은 좁은 면적에 적용한다.

(박영순 외, Color Design Project 14), (2007)

알아두세요!

색상별 치유효과는 다음과 같다.

- · 빨강색(Red):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 · 주황색(Orange):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기통, 흉부와 신장병에 도움을 준다. 식욕을 돋우고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해준다.
- ·노란색(Yellow): 피부, 신경계통,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희망, 기쁨의 감정을 반영한다.
- · 녹색(Green): 긴장을 완화 및 피로감 감소, 두통, 불면증, 히스테리에 효과가 있고, 생리기능의 조절로 조화로운 심리상태를 유도한다.
- · 파란색(Blue): 두통, 스트레스, 신경계통에 도움을 주며 긴장을 이완시켜 안정감을 준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 · 보라색(Purple): 시력 향상, 눈, 코, 귀의 기능에 도움을 주고 심리적 에너지를 주는 색이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 · 흰색(White): 고통 완화에 효과가 있고, 명상 중 집중력을 향상시켜 준다.



벽면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대비가 강한 색이 적용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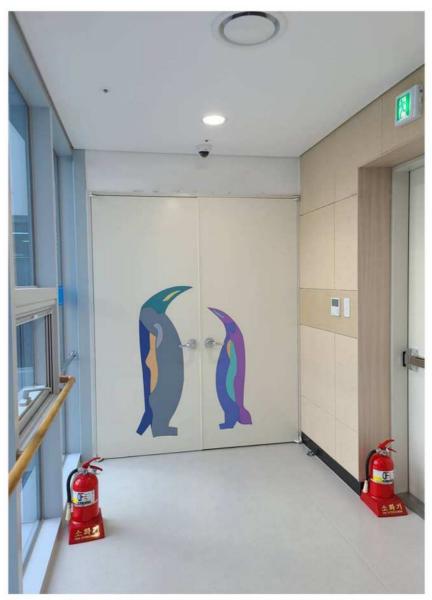
조명

기본 워칙

- ·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기구의 종류, 설치방법, 적정조도 등을 선택한다.
- · 공간에 전반조명, 국부조명, 작업조명 등 다양한 조명방식을 혼합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조명의 종류와 위치,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 · 자연채광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공간을 연출하고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도, 만족도를 높인다.

일바

- ·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 시각에 의한 피로감 및 불쾌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양과 질을 배려하여 적정한 조도수준, 조명방식, 조명기구 등을 선택한다. KS조도 기준으로 70대는 2.6배, 80대는 3배 정도의 조도 기준을 적용한다.
- · 하나의 조명방식으로 계획하는 것 보다는 전반조명, 국부조명, 작업조명 등 다양한 조명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성한다.
- · 비상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비상조명계획을 검토한다.
- · 상황에 따라 조도를 조절하여 눈부심 제거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밍(Dimming) 스위치를 설치한다.
- · 확산조명은 균일한 빛 반사를 위해 에어텍글라스 커버 또는 확산 아크릴 커버 재질을 적용한다.
- · 부드럽게 확산되는 전반조명을 주된 조명으로 선택하며, 스탠드나 벽부등의 국부조명을 함께 설치한다.
- ㆍ천장조명은 누웠을 때 눈부심이 없도록 램프가 노출되지 않는 등기구를 사용하거나 광원이 직접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배치한다.
- · 빛이 깜박이는 플리커 현상 없이 깨끗한 빛을 내는 조명기구를 적용하여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명방식을 선택한다.
- 인공조명의 색온도는 최대한 자연광에 가까운 색으로 맞추어 계획한다. 자연광에 가까울수록 실내 공간의 색채가 실제 색상에 가깝게 인지되며, 색과 시각적 대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방화문 출입구를 예쁜 그림을 부착하여 멀리서도 인지가능하도록 계획

6 사인

기본 워칙

- · 사인의 목적에 따라 정보를 충분히 담아야 하며,이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확보해야 한다.
- · 명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 사인을 배치하되,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전달방식을 제공한다.
- · 조명과 색채를 이용한 시각적 대비를 통해 내용이 명확하고 즉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인은 단순하고 명료한 언어, 심볼/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모든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 ·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건축물 전면부에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 · 경로당 명칭, 소속과 설립년도, 홍보용 게시판 포함한 안내사인을 제공한다.
- · 진입로가 복잡한 경우 잘 보이는 구간에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 ㆍ지주형 시설 명 안내사인은 진입로 동선상의 결절점에 설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다양한 진입방향에서 눈에 띄기 쉬워야 한다.
- · 공간구성, 설비, 비품 등은 예측 가능한 위치와 구조를 가지도록 계획한다.
- · 비상구나 비상기기, 화장실 등은 위급하거나 급한 상황에서 찾는 경우가 있으므로, 멀리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한다.
- · 명시성, 식별성이 높고 정확한 정보를 픽토그램이나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 언어, 지적능력, 연령에 관계없이 이해하기 쉬운 사인시스템을 계획한다.
- 픽토그램이나 그림 등을 적극 이용하되, 의미 없고 애매모호한 그림이나 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 · 어두운 상황에서도 안내사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축광시트를 적용한다.
- · 안전대피시설, 사인시설은 눈에 잘 띄는 강조색으로 적용하여 대피동선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 ㆍ시각요소 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 등의 오감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계획한다.
- · 화장실 등의 특정공간을 알리는 소리, 향기가 있는 식재, 촉감이 다른 마감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 · 심볼: 특정 대상의 특징을 상징화하여 단순화한 그래픽 마크
- · 픽토그램: 특정 시설물, 장소 따위의 성격을 나타낸 그래픽 마크



흑백의 강한 명도대비로 가독성을 높이고, 픽토그램을 혼합하여 알아보기 쉽게 디자인한 사인

- · 사인 글씨의 크기, 색채 등 알리고자 하는 정보가 눈에 띄기 쉽도록 디자인하고, 바탕과 글씨의 대비를 크게 조정한다.
- · 누구든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게시판은 필요한 정보만 부착하는 규모를 유지한다.
- ·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의미 없는 장식적 요소는 배제하고, 최대한 간결한 디자인과 시설명이 눈에 띌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사이즈로 설치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한다.
- · 야간 인지성을 위해 시설명이 눈에 잘 띄도록 조명을 함께 설치한다.
- · 각 층의 엘리베이터 홀이나 이동이 잦은 벽, 혹은 프로그램실 주변에 작은 게시판들을 미리 계획 하여 여기저기에 산재된 게시물이 미관을 방치하거나 시인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각 실마다 부착되어 실명을 안내하는 실별 안내사인은 이용자가 걸어오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면과 측면 사인을 함께 설치한다.
- · 실명은 글자 뿐 아니라 실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림을 함께 사용하여, 지식이나 이해 정도에 관계없이 알기 쉽게 제작한다.
- ㆍ화장실 등의 특정공간을 알리는 소리, 향기가 있는 식재, 촉감이 다른 마감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층별 주조색을 선정하여 사인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바닥이나 벽 마감재에도 적용하여 층별 공간의 인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화장실은 층별로 같은 색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다



해당층의 숫자를 크게 부착하고 배경과 뚜렷한 대비가 되는 층별 지정 색채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위치 인지에 도움 주는 사인

[사인의 유형]

정보사인

- · 대지 또는 건물의 전반적인 안내 기능
- · 건물 내외부의 정보를 모두 포함 (예) 지도, 다이어그램, 안내표지판 등



층별 비상대피 안내 사인

방향사인

- · 대지 건물 내부의 방향 안내를 담당
- · 화살표를 포함 (예) 목적지를 안내하는 사인보드







층 방향 표시 사인

의무사인

· 건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사인 (예) 소방안전, 비상대피, 건강과 안전 표지판 등





비상대피와 관련된 안내 사인



벽체를 활용한수납장과 음수대

가구 및 수납공간



하단부에 서랍장을 추가하여 수납공간을 확보한 소파

기본 원칙

- ㆍ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서리가 둥근 형태 및 목재, 쿠션 등의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된 가구를 선택한다.
- · 보행보조기, 휠체어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조와 재료를 선택한다.

일반

- · 복수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자재 및 도구의 보관을 위한 충분한 수납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 노인시설의 경우 많은 장애보조기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현관 출입구 근처에 휠체어, 지팡이와 같은 보조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보관 장소를 계획한다.
- · 수납을 위한 벽장 및 창고뿐만 아니라, 시설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보관하는 공간을 모든 기능의 입구부분에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 소규모 시설로 공간의 복합적 이용이 많으므로, 가구 및 기기의 수납을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 벽의 상하를 이용하는 수납장이나 소규모의 공간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근접 배치하여야 한다.
- ·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가구를 선택한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모서리에 충격을 방지하는 부드러운 재질의 마감재를 덧대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인다.
- · 안전성을 고려하여 부딪쳐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목재나 쿠션소재 등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한다.
- 안전성을 고려한 라운드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한다.
- · 테이블 다리는 둥근 형태로 높낮이가 조절가능한 것을 권장한다.
- · 의자의 형태는 각지지 않고 둥근 형태를 지니며, 몸을 지지했을 때 쉽게 넘어가지 않는 구조를 선택한다.



노인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곡선형으로 제작한 가구

- ·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기 쉬운 가변식 가구 또는 이동식 파티션을 이용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다.
- · 수납물품별 대형/소형 수납장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운영, TV지원 등을 위한 수납장을 설치한다.
- · 수납장의 깊이는 최대 600mm 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손이 안쪽까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300-400mm의 깊이로 넓고 얕게 계획한다.
- ㆍ선반의 앞면은 배경과 시각적 대비를 이루게 하여 내용물과 선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ㆍ 옷걸이와 선반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신체크기를 지닌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섬유제품에는 오염에 강한 소재 및 방염처리된 소재를 선택하며, 소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한다.
- · 소파는 이용자가 편히 기댈 수 있도록 등받이가 기울어진 형태를 적용한다.
- · 대형 수납장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가벼운 소재의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다.
- · 이용자의 손이 닿는 높이에 상부 수납장을 계획한다.
- · A4 아크릴 게시판, LED 디지털 시계, 돋보기 보관함, 일정관리 보드 등의 편의설비를 계획한다.

8 기타

기본 워칙

- · 주변 배경과 시각적 대비를 이루어 명확하게 인지되도록 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키높이를 고려하여 위치를 계획한다.
- · 콘센트, 스위치, 컨트롤은 즉각적으로 인지되고 접근하기 쉬우며, 작동이 단순하고 일관된 형태로 디자인한다.
- · 동작감지센서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1. 콘센트, 스위치, 컨트롤

일반

- · 콘센트, 스위치, 컨트롤은 즉각적으로 인지되고 접근하기 쉬우며, 작동이 단순하고 디자인이 일관적이어야 한다.
- ㆍ모든 스위치와 콘센트는 주변 벽과 배경에 시각적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명확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색으로 프레임을 둘러 구분한다.
- · 모든 컨트롤과 스위치는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 · 스위치는 15도 각도로 경사진 면에 배치할 경우 이용자의 작동이 더욱 편리하다.
- · 색으로 스위치의 위치와 전원 버튼을 표시할 경우, 글과 그림을 함께 사용하여 표기한다. 이때 빨간색과 초록색은 색 구분에 혼란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을 피한다. 글과 그림은 촉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 ·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출입문 스위치나 버튼의 위치를 계획한다.
- · 모든 콘센트, 스위치, 컨트롤은 장애물과 실 내부 코너에서 500m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 초기 계획 시 문, 창문 위/아래, 걸레받이 주변에 향후 추가 설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시각적 대비

- · 주변 배경과 시각적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시성을 높인다.
- · 모든 스위치와 콘센트 주변 벽과 배경에 시각적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명확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색으로 테두리를 둘러 구분한다.

조명 스위치

- · 조명 스위치는 문 프레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하되 문 손잡이와 높이를 동일하게 계획 한다.
- · 조명 스위치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명을 여러 곳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2로(two-way) 또는 3로(three-way) 스위치를 설치한다.
- · 계단과 복도에 자동 점멸 조명을 설치할 경우, 타이밍 세팅은 모든 이용자의 적정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 조명 스위치는 눌러서 on/off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큰 로커 스위치(rocker switch,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형태)를 사용한다.
- · 조명 스위치는 개별 독립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개가 연결된 스위치(multi-gang switch)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용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공간별로 구분하기 쉽게 큰 글자와 색채를 적용한 스위치

기능

- · 동작감지센서가 적용된 스위치는 에너지 절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데 유용하다.
- · 움직임, 온도 변화, 소리 등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스위치는 수도꼭지, 조명 스위치, 문 개폐 등 다양한 곳에 유용하게 활용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에너지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통유리창으로 자연채광을 최대 확보한 공간

2. 채광. 화기

채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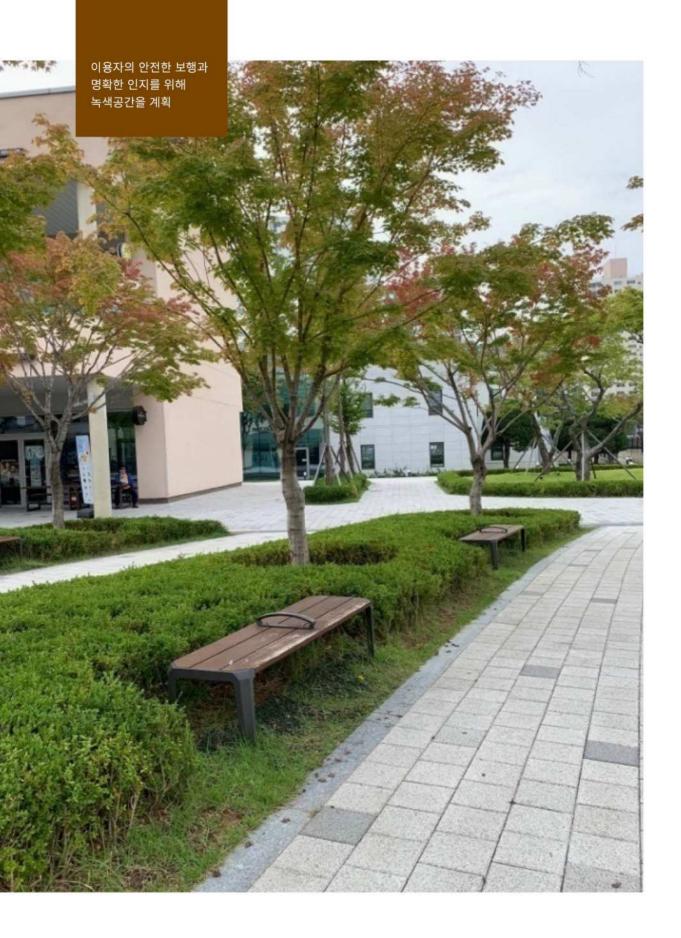
- ㆍ대부분의 활동프로그램은 적절한 자연채광을 필요로 하므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주된 활동공간을 배치한다.
- · 자연채광이 잘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중정, 온실, 천창, 고창, 열리는 창문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햇빛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 · 활동프로그램의 특성 또는 활동시간에 따라 눈부심이나 햇빛의 유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차양 등의 외부설비와 블라인드 등의 내부설비를 갖춘다.
- · 야간이용을 고려하여 채광과 조명을 계획해야 하며, 특히 자연채광과 햇빛은 심리적 외로움이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한다.

화기

- · 환기는 자연환기, 기계환기, 공조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며, 최적의 환기 조건은 적절한 크기와 접근 가능한 창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 · 환기를 위해 창문을 계획할 시 자연채광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ㆍ창문의 개폐는 건물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하여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열려 있는 문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 모든 창문은 언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변 공간을 확보한다.
- ㆍ기계환기와 공조장치는 필터와 먼지 배출 등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 · 기계환기와 공조장치는 초기 제품 선택 시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
- · 원활한 자연환기와 안정적인 실내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
- · 오염원이 될 수 있는 화장실, 주방, 욕실 등은 철저한 오염관리와 함께 자연환기 및 급배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연 채광이 확보된 활동공간



3

외부 접근 공간

1.	주차장	66
2.	외부 출입구	67
3.	진입로	69
4.	경사로	70
5	이브계다	72

1 주차장

기본 원칙

- ·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해 승하차 및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 · 주차구역 및 출입구 위치를 안내하는 사인을 제공한다.
- ·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출입구까지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캐노피를 설치하여 비, 눈, 바람 등 외부 기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

일반

- 주변 배경과 시각적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시성을 높인다.
- · 주차구역의 폭은 최소한 3.3m 이상(주차폭 2.3m+통행로 1.0m 이상) 확보한다.
- · 내부로 연결되는 문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도모한다.
- · 응급상황 시 구급차 및 응급수송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동선을 확보한다.
- · 휠체어, 보행 보조기 등이 차에서 내리기 쉽게 충분한 폭을 확보한다.
- · 건물 입구나 시설까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계획한다.
- · 주차구역 주변의 보도에는 도로시설물이 가로막지 않도록 한다.
- · 주차구역의 바닥면은 단단하고 평평하며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끄럽게 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주차구역의 바닥면이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울기가 1/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에서 전층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운전자의 수를 고려하여 가능한 충분히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 · 주차구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를 강조하는 명확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바닥에 유도 선이나 안내 표시, 입식 안내 사인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 · 보호자의 자가용, 택시 등이 잠시 주차할 수 있는 승하차 공간을 확보한다.
- · 자동차(자녀 등 보호자의 차량, 택시 등)를 타기 위해 대기할 때, 우천시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캐노피 등이 설치된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외부 출입구



이용자가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 출입구

기본 원칙

- · 정보안내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자동문 시스템, 미닫이문, 턱 제거, 버튼의 위치 등을 고려한다.
- · 캐노피와 대기공간을 계획하여 이용자가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일반

- · 이용자의 사용빈도, 이용률,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접근이 유리하도록 계획한다.
- ·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해 유효폭 1200m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단, 전동휠체어가 교행하기 위해서는 1800mm 이상의 폭을 권장한다.
- ㆍ비나 눈, 흙을 털 수 있는 발판을 설치할 경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매립하여 바닥면과 평탄하게 마감한다.
- · 휠체어, 우산, 지팡이 등의 보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 · 대기용 의자와 더불어 목발, 우산, 짐 등을 잠시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를 마련한다.
- · 주출입구 근처에는 구급차나 노인을 모시고 오는 사람을 위해 임시 승하차 공간을 확보한다.
- · 휠체어 및 보행보조용구 이용자를 고려하여 충분한 통로 폭을 확보하고, 손잡이 등의 보조설비를 설치한다.
- · 주출입구에 캐노피 등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우천시에 대비한다.
- ·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캐노피 하부는 강조색을 적용한다.
- · 출입구는 인지성이 높은 색채를 적용한다.
- · 출입문 옆에 수직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 경로당 명칭 적용된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 · 이동 동선의 방향을 안내하는 조명을 설치한다.
- · 출입구 인근에 보행보조기 보관공간을 마련한다.(출입동선과 겹치지 않게 유효폭 확보)
- · 보행보조기 거치용 고정바, 안내사인, 카스토퍼 등을 설치한다.

안전

- · 전면 유리로 된 출입문의 경우, 출입구를 잘못 인지하거나 유리를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리에 시트지 등을 부착하여 인지할 수 있게 한다.
- · 유리로 된 여닫이문은 손끼임 방지를 위해 고무 등 손 보호대를 설치한다.
- ·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은 물론 방문객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행진입로와 차도는 명확히 분리한다.
- · 노인의 안전한 이동 및 활동을 위해 바닥의 단차를 없애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완화한다.







도로에서 정문까지 단차와 턱이 없는 경사로

진입로

기본 워칙

- · 진입로는 차도와 보행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 바닥면은 단차제거, 벌어진 틈새관리, 평탄한 마감 등을 통해 이용자의 보행 시 장애물을 최소화 한다.
- · 내부공간과 연계된 형태의 녹지 또는 휴게공간을 계획한다.

일바

- · 진입부부터 현관까지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을 확보한다.
- · 노인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접근 가능한 진입로를 계획한다.
- ㆍ대지입구와 건물입구 사이, 주차구역과 건물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한다.
- · 건축물 전면부는 진입로에서 눈에 잘 띄도록 계획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을 적용한 보행안전구역을 확보한다.
- · 경사로나 계단으로 이루어진 보행로는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한다.
- · 휠체어 이용자나 노인을 위해 진입로에는 보행을 돕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 야간 이용 시 안전한 보행을 위한 상시 조명을 설치한다.
- ·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도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유효폭은 1200mm 이상 확보한다.
-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 연석, 울타리 등의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한다.
- · 차량속도 저감시설(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 · 경로당 인접 도로에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 · 이동동선을 따라 연속적인 수평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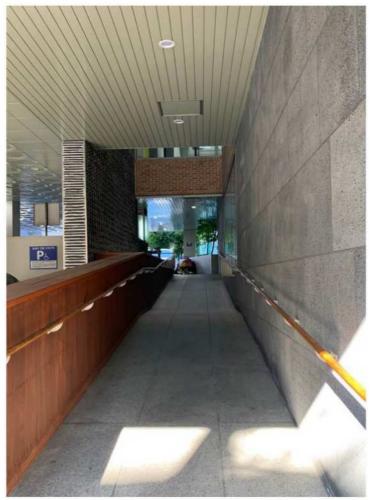
마감 및 재료

- ㆍ배수구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휠체어의 바퀴나 지팡이 끝이 걸리지 않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 · 바닥표면은 휠체어의 주행성을 고려하여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녹지/휴게공간

- · 외부진입로에 텃밭이나 녹지조성을 하여 친환경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 ·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의 느낌이 들도록 데크나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 · 각 기능별(여가, 생활, 재가기능) 특성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홀 및 내·외부가 연계된 공간을 확보한다.
- · 확장된 외부공간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옥상녹화를 통해 단조로운 실내공간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4 경사로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경사로

기본 원칙

- · 경사로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추락 방지턱, 기울기 완화, 상부 지붕 설치, 안전손잡이 등을 계획 한다.
- · 그림자와 눈부심, 빛 반사를 최소화하고 경사로 전체에 고르게 조도가 분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일바

- · 보도에서 현관까지 단차와 턱이 없도록 경사로를 두어 필요 시에는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경사로의 유효폭은 법적 치수 1200mm 이상 확보하며 경사진 접근로의 경우 기울기는 1/18 (지형상 1/12까지 완화가능)이하로 계획한다. (경사도 계산법: L(경사로 길이) ≥ 12H(경사로 높이)
- · 경사로는 가급적 휘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계획한다.
- · 저시력인을 고려해 경사로 및 경사가 끝나는 도착지점까지 가시적으로 대비를 이루어 눈에 잘 띄도록 한다.
- · 경사로 끝면이 바닥면과 높이가 다를 경우, 경계석이나 모서리 보호 구조물을 설치하여 낙상을 예방한다.
- · 경사로는 계단과 함께 설치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 ㆍ 경사로와 계단을 함께 설치한 경우,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되 경사로 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 경사로의 시작과 끝 지점, 참 등의 300mm 전면에 경사로 폭만큼 점자블록을 설치하되. 단 차이를 최소화하여 마감한다.
- · 시작과 끝지점에 경사로를 예측할 수 있는 주의사인을 부착한다.

안전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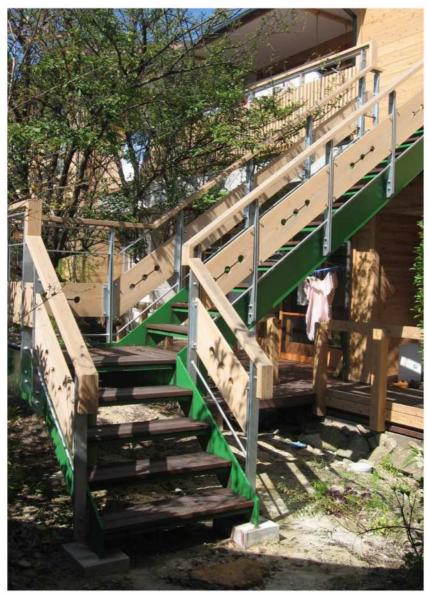
- ㆍ경사로 양쪽 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바닥면과 시각적 대비를 명확하게 이루어 눈에 잘 띄게 계획한다.
- ㆍ추운 겨울에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손잡이는 차가운 메탈 소재보다는 목재나 플라스틱 코팅 소재를 선택한다.
- 이용자의 신체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2열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재료 및 마감

- · 경사로 표면은 물이 잘 빠지도록 마감한다.
- · 경사로 표면은 비에 젖거나 건조한 상태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마감하고, 그루빙(미끄럼 방지를 위해 u자 또는 v자로 홈을 내는 것) 등으로 미끄럼방지 기능을 강화한다.

조명

- · 경사로에는 조명을 고르게 비추어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조명을 사용할 시에는 빛반사, 강한 광원의 사용, 강한 그림자 형성 등이 나타나지 않게 계획한다. (권장조도 150lux)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과 명확한 공간인지를 위해 시각적 대비를 강조한 외부계단

외부계단

기본 워칙

- · 계단은 시작지점과 도착지점에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미끄럼 방지 및 배수조건을 고려한다.
-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단코, 시작점과 도착지점, 중간 전이공간 등에 시각적 대비를 적용 하여 명시성을 높인다.
- · 빛반사, 그림자 형성을 최소화하여 조명의 위치와 광원을 계획한다.

일반

- · 계단 치수는 모든 칸이 깊이와 높이가 일정해야 하고, 챌면의 높이 160mm 이하, 디딤판 폭은 280mm 이상으로 설치한다.
- · 계단의 디딤판과 도착지점의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적용하고, 물이 고여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 계단의 도착지점은 계단폭과 동일한 길이를 제공하고, 문을 열고 닫을 때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계단의 단차 구분을 위해 챌면 사인을 설치하고, 계단의 시작과 끝단은 명확한 시각적 대비를 이루도록 색채를 계획한다.

마감 및 재료

- · 모든 계단은 미끄럼방지 마감을 모서리에 하고, 띠를 두를 경우 시각적으로 대비가 잘 이루어지는 색상과 소재를 적용한다.
- ㆍ 저시력인을 고려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에 촉감으로 알 수 있는 표면 마감재를 적용한다. (예, 코듀로이 요철 – 한쪽 방향으로 골이 나도록 오목/볼록하게 굴곡진 형태)
- 추운 겨울에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손잡이는 차가운 메탈 소재보다는 목재나 플라스틱 코팅 소재를 적용한다.

조명

- ㆍ계단에는 조명을 고르게 비추어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조명을 사용할 시에는 빛반사, 강한 광원의 사용, 강한 그림자 형성 등이 나타나지 않게 계획한다. (권장조도 150lux)



4

내부진입 및 이동공간

1.	출입구/현관	76
2.	복도	79
3.	엘리베이터	81
4.	계단	84

1 출입구 / 현관



신발장 옆에는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의자와 손잡이 설치

기본 원칙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조도의 조명을 계획하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 이용자의 접근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효폭을 제공한다.
- · 신발을 갈아신기 편리하고 신발 및 물품의 수납이 가능한 수납공간을 계획한다.

일바

- · 열고 닫을 때 너무 무겁지 않은 문을 설치한다.
- ·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가능한 한 전체 개방이 가능한 패닉자동문(밀어서 양쪽 문을 모두 개방할 수 있는 형태의 특수자동문)을 설치한다.
- ·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900mm 이상 확보하고 바닥면에 문턱과 단차를 제거한다.
- ·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공간 1200mm 이상 확보한다.
- · 비나 눈, 흙을 털 수 있는 발판을 놓을 경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매립한다.
- · 유리문은 충돌방지 시트를 부착한다.
- · 출입 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설치한다.
- · 바닥 위생 및 출입구 단차 해소를 위한 현관 발판을 설치한다.

안전손잡이

- · 서서 신발을 갈아 신을 때 균형을 잡아주거나, 앉고 일어서는 자세를 지지해주는 수직 안전손잡이. 또는 봉을 설치한다.
- · 손근력이 약한 노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조명

- · 야간 이용 뿐 아니라 수납장 하부의 휠체어 보관공간, 신발장 내부 등 상시 어두운 공간에도 노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 · 야간에 주출입구의 인지성을 높이며, 내외부의 방향을 유도하는 조명을 계획한다.
- · 간이벤치 상부에 센서형 간접 조명을 설치한다.
- ·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천장에 매립 센서등을 설치한다.
- · 외출 시 실내 전체 조명 소등을 위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한다.



앉아서 신발을 갈아신을 수 있는 의자



균형을 잡아주는 봉 설치

인지사인

- · 자동문은 문 열리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열림 인지사인을 부착한다.
- ㆍ 자동문 스위치는 벽과 구별되며 시인성 높은 색상으로 인지사인을 적용한다.
- ·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생활인지사인을(외출전 확인) 부착한다.

신발장

- · 정리정돈이 가능하도록 내부가 보이는 개방형 신발장을 계획한다.
- · 자주 신는 신발 보관 및 쉽게 인지 가능한 하부 조명형 신발장을 마련한다.
- · 앉아서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벤치를 설치하고(엉덩이 지지용 보조쿠션 제공), 벤치 하부에 개방된 신발장을 적용한다.
- · 이용자가 서서 신발을 갈아신기 편하도록 안전손잡이가 부착된 일체형 신발 받침대를 설치한다.

기타 수납공간

- · 손이 닿는 높이에 상부 수납장을 계획한다. (통풍 고려, 가벼운 소재, 손끼임 방지 디자인)
- · 휠체어, 우산, 지팡이 등의 보관 및 수납공간을 계획한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채와 친근한 이미지가 적용된 복도

기본 원칙

- · 복도는 이동 및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휴식 또는 보호자, 가족의 대기 및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보행 중 장애물이나 단차, 미끄럼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과 돌출 구조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한다.

일반

- · 행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복도는 통로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복도공간은 이동뿐만 아니라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휴식 또는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동일한 층 내에서 복도는 단차가 없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한다.
- · 모든 동선은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층고는 충분히 높아야 한다.
- ㆍ 창과 문은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한다.
- · 복도는 보호자, 가족이 대기하는 공간의 기능도 겸하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좌석 공간을 제공한다.
- · 복도가 긴 경우, 적당한 간격으로 쉬어갈 수 있는 좌석을 배치한다.
- · 경사로 끝, 복도 끝, 복도 교차지점에서는 휠체어, 유모차 등이 회전하여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 라디에이터(radiator), 소화기 등은 복도 폭을 좁게 만들거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 시부터 위치를 고려하고, 가능한 벽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 · 식물이나 좌석 배치 시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 · 복도의 유효폭은 1200mm 이상 (중복도인 경우 1500mm 이상) 확보한다.

안전손잡이

- · 복도의 양측에 연속하여 손잡이를 설치하며, 복도 폭이 좁은 경우는 휠체어의 이동 시 충돌에 대비하여 킥플레이트 등을 설치한다.
- · 복도 벽면 전체에 양쪽으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되, 설치 후 복도 폭이 좁아지지 않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 · 안전손잡이는 튼튼하게 부착하고 잡기 편해야 하며, 주변 벽과 대비를 이루는 색을 적용한다.
- · 안전손잡이를 설치 시 끝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표시한다.
- · 라디에이터와 안전손잡이가 너무 가까이 위치할 경우, 손잡이가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 · 안전손잡이는 차가운 스틸 소재나 미끄러운 소재는 선택하지 않는다.

재료 및 마감

- ·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고 관리상 바닥면 전체가 미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부(최소폭 1200-1500mm 정도)만이라도 미끄럽지 않게 계획한다.
- ㆍ 바닥 마감재의 색채 대비, 재질 변경, 가구 배치 등으로 동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안내한다.

조명

- · 비상시 빛으로 유도가 이루어지므로 바닥면과 가까운 위치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복도에 조명기구를 밝게 설치하되 배터리 내장형으로 계획한다.
- · 전반조명을 사용하여 일정한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며, 다른 공간과의 밝기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 야간 이동을 위해 눈부심이 적은 상시조명등을 설치하고, 벽면의 게시물을 위한 스포트라이트 및 벽부등을 설치한다.

엘리베이터



명확한 공간 인지가 가능하도록 층별 안내 사인을 부착한 엘리베이터 입구

기본 원칙

- · 엘리베이터 내외부에서 층별인지가 가능하도록 안내사인을 적절한 위치에 계획한다.
- ·모든 층 안내는 시각 및 청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 엘리베이터 내부 공간은 휠체어가 회전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 · 바닥과 천장, 안전손잡이, 버튼 등은 명확한 시각적 대비를 주어 내부 공간의 규모와 형태를 이용 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 · 모든 층 안내는 시각 및 청각으로 전달되게 하고, 층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 ·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계단과 인접 배치하여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원활한 환기와 안정적인 공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
- · 엘리베이터 내부에 손잡이와 함께 잠시 기대거나 걸터앉을 수 있는 간이의자를 설치한다.
- · 촉각 문구는 표면에서 30-40mm 이상 튀어나오고, 1.5mm 높이로 제작하며, 버튼 간의 간격은 10mm로 계획한다.

안전

- · 승강기 내·외부에는 도착 및 운행 여부를 알려주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한다.
- · 사람들이 문에 끼는 것을 막기 위해 광감지식 개폐장치 및 되열림 장치를 설치한다.
- · 엘리베이터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창이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한다.
- · 내부에서 휠체어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후면에 거울을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 안전손잡이는 내부에 컨트롤 패널을 피해서 설치한다.
- · 안전손잡이는 바닥면에서 900mm 높이, 벽면에서 35-45mm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 내부의 수평 손잡이를 바닥에서 800-900mm 높이에 설치한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마련된 간이 휴식용 의자



층별로 색상을 다르게 적용하여 식별성을 높인 버튼과 안내표지판

크기 및 면적

- · 출입구에서 단차 없는 통로와 연결하여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휠체어 회전에 필요한 1800x1800mm 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 엘리베이터 문은 950mm 이상 폭이 열리도록 계획하고, 출입구 통과 유효폭은 800mm 이상 설치한다.
- · 엘리베이터 내부 공간은 최소 1800x1800mm의 면적을 확보한다.
- · 뒷벽면에 거울을 부착할 경우, 바닥면에서 900mm 높이에서부터 천장까지 시공하여 이용자가 거울면을 복도로 인지하지 않도록 한다.
- · 유리와 거울은 이용자의 눈높이에 마크를 부착하여 혼란을 최소화한다. (위치 바닥면에서 850-1000mm/1400-1600mm)

안내 및 유도

- · 건물 입구에 엘리베이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제공한다.
- · 유리벽으로 된 엘리베이터를 제공할 시, 일반 폐쇄형 엘리베이터를 함께 인접 배치하여 제공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 층수를 인지하기 쉽도록 엘리베이터 입구 주변에 충분한 크기의 숫자를 표시한다.
- ㆍ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층별인지가 쉽도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때 보이는 위치에 층수 및 층별로 다른색을 적용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 · 층수 안내 표지판은 엘리베이터 버튼 주변과 엘리베이터 문 맞은편 두 군데에 동시에 제공하여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층수 확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 · 층수 안내 숫자는 벽면과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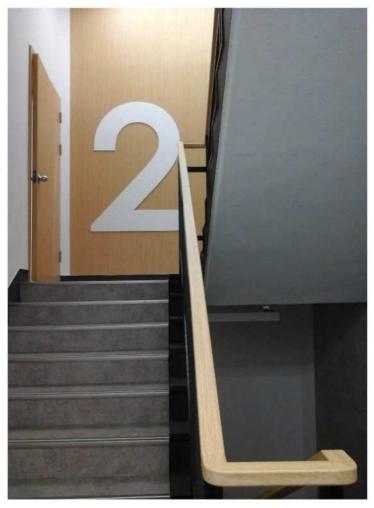
재료와 마감

- 바닥과 천장은 시각 대비를 주어 내부 공간의 규모와 형태를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엘리베이터 내부 바닥은 광택이 없고 단단하며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한다.
- · 엘리베이터 내부 바닥은 각 층 바닥면과 유사한 마감재를 적용하고, 어두운 색상과 톤은 피하여 이용자가 단차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 · 벽면은 반사와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택이 없는 소재를 사용한다.

조명 및 색채

- · 바닥면과 엘리베이터 문은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도록 색채를 계획한다.
- · 조명은 빛반사와 그림자를 고려하여 고르게 퍼지도록 계획한다.
- · 조명은 간접조명과 천장 패널 방식을 제공한다.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150lux 이상으로 설치한다.
- ㆍ야간에도 디딤판이 잘 보이도록 발 밑 조명이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 위치에 주의한다.
- · 유리와 거울의 마크는 거울에 비치는 뒷배경과 시각적으로 대비가 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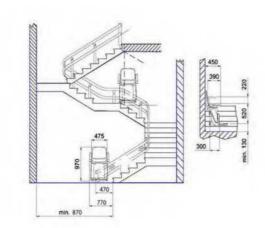
해당층의 숫자를 크게 부착하여 공간 인지에 도움을 주는 계단

기본 원칙

- · 계단은 유효폭 1200mm 이상 확보하고, 모든 계단면을 동일한 높이로 계획한다.
- · 디딤판과 챌판, 계단코 등에 시각적으로 대비를 주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계단의 디딤판이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조명과 색채를 계획하고, 점자블록, 안전손잡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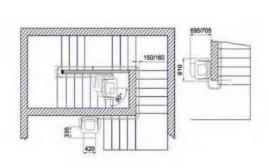
- · 보행능력이 저하된 노인은 계단의 이용 빈도가 낮지만, 긴급 시 안전한 대피로로 사용하기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 · 수직이동을 위한 전동 리프트를 설치한다.
- · 모든 계단 모서리는 시각적으로 인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 계단의 아래와 위쪽 도착지점은 계단폭에 상응하는 길이로 공간을 확보한다.
- · 계단 아래쪽에는 층고를 충분히 확보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계단의 양측에는 연속하여 손잡이를 설치하며, 챌면 높이는 18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80mm 정도를 권장한다.
- · 계단에는 챌판이 없는 경우 디딤판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챌판을 설치한다.
- · 한, 두 단 정도의 단차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3단 이상의 계단으로 계획한다.
- · 디딤판의 계단코는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돌출이 없고 다른 단과 구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하며, 특히 시작단과 끝단의 디딤판은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계획한다.
- · 야간에도 디딤판이 잘 보이도록 풋라이트를 설치하고, 어둡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은 조명을 계획한다.
- · 비상시 노인의 빠른 대피를 위한 경사로를 병행 설치한다.
- · 계단 아래와 위쪽 도착지점은 재질이나 마감, 점자블록 등의 촉각을 이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 · 계단 폭이 넓을 경우, 가운데에 별도의 안전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한다.



계단(Front View)



수직이동을 위한 전동 리프트 설치



계단(Top View)



경사로 병행 설치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이중 안전손잡이



색채대비로 인지성을 높인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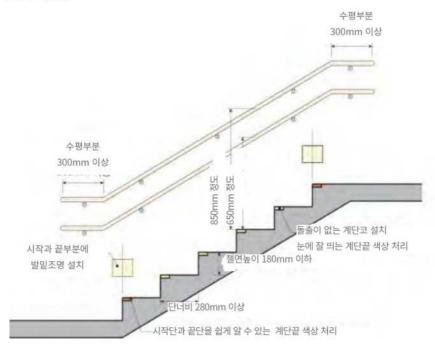
색채 및 마감

- · 계단 아래와 위쪽 도착지점은 재질이나 마감, 점자블록 등의 촉각을 이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 한다.
- · 디딤판의 계단코는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돌출이 없고 다른 단과 구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하며, 특히 시작단과 끝단의 디딤판은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배려한다.

조명

- · 야간에도 디딤판이 잘 보이도록 발밑 조명이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 위치에 주의한다.
- ·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명을 계획한다.

[계단계획의기준]





5

내부 기능별 공간

1.	식당 및 주방		90
2.	공용공간		96
3.	프로그램실		97
4.	생활실		100
5.	화장실]	102

1 식당 및 주방

기본 원칙

- · 식당은 소규모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휠체어가 식탁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주방은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제공하고, 안전한 이용,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식사공간

- ·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공간을 연출하며, 외부 조망과 채광이 좋은 위치에 배치한다.
- · 식사공간은 식사 뿐만 아니라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고 독서 등도 할 수 있는 휴게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휠체어, 보행보조기, 지팡이 사용자를 고려하여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면적으로 계획하며, 테이블 사이 간격은 충분히 확보한다.
- · 식사공간과 주방은 할머니방 가까이에 하거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계획한다.
- · 식사공간은 사람이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 뒤로 사용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충분한 여유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용자가 모두 둘러앉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를 제공해야 한다.
- · 식사공간은 독립된 방 형태이거나, 거실 또는 부엌의 한 켠에 마련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거실과 부엌/식사공간은 영역을 분리한다.
- · 부엌과 인접하거나 부엌 내에 식사공간을 배치할 경우, 이용자가 음식을 나를 때 동선을 최소화하고 문을 드나드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 · 테이블의 최소 두 면은 1200mm의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 식탁 아래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다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는 구조를 제거한다.
- · 가구는 모서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둥근 가구를 배치한다.
- · 바닥과 벽의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용자가 명확하게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과도한 눈부심 현상은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빛반사를 최소화한 무광 소재를 적용한다.

일반

- · 주방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동선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 · 주방은 음식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식사공간과 인접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작업의 편의를 위해 보조 식탁을 제공한다.
- ㆍ사용에 편리한 수전을 설치하고 노인들이 음식준비나 설거지에 참여할 수 있는 싱크대나 작업대를 마련한다.
- · 주방에 접한 문은 주방의 주된 작업영역에서 벗어나도록 계획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 · 거실과 주방/식사공간 사이에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 필요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 · 바닥과 찬장은 톤을 조절하여 조화로운 색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 음식 조리시 환기를 위해 창문 확보하고, 벽면은 내오염성 타일을 적용한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마련된 간이 휴식용 의자



소규모로 밝고 아늑하게 구성한 식당

아전

- · 부엌에는 바닥면에서 450-1300mm 높이 범위에 다용도 소형 소화기, 벽 부착식 방화용 모포 등을 비치한다.
- ·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밸브 자동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 뜨거운 물은 40도를 넘기지 않도록 물온도를 조절하고, 싱크대 사용시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압을 조절한다.

색채와 조명

- · 요소들 간의 색채 또는 톤 대비, 반사가 심한 소재는 선택하지 않는다.
- ㆍ작업대 모서리, 핸들과 컨트롤, 바닥과 벽, 스위치와 소켓 등은 색채 또는 톤의 대비를 통해 명확 하게 시각적으로 인지되도록 계획한다.
- · 작업대(카운터) 위에는 눈부심이 덜한 작업조명을 설치한다.
- · 선반이 깊을 경우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내용물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가정과 같은 친숙한 분위기의 주방과 식당

작업대

- · 조리대와 싱크는 연결하여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L자형 또는 U자형 구조로 계획한다.
- · 작업대(카운터)와 작업대 사이의 간격(U자형) 혹은 벽면과 작업대 사이의 간격(주된 작업공간) 은 1200-1500mm 를 확보한다. 1200mm 의 거리는 한 사람이 찬장문이나 서랍문을 열고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이며. 1500mm 일 경우에는 두 사람이 등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휠체어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1500-1800mm 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 · 싱크대 높이는 800-850mm, 상부 선반 하부 높이는 1600mm 이하로 설치한다.
- · 작업대는 높이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760-900mm의 높이 범위에서 계획하다.
- · 작업대 면에서 최대 450mm 높이에 상부장을 배치하고, 내용물을 꺼내기 쉽도록 풀다운(pulldown) 방식의 선반을 계획한다.
- · 싱크대나 가열대 위에는 키가 큰 사용자가 머리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상부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 ㆍ 싱크대와 가열대는 일방향으로 연속되게 배치하여 뜨거운 냄비를 들고 이동하는 동선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 · 가열대의 양 옆에는 최소 300mm의 여유공간을 제공한다.
- · 싱크대와 작업대의 벽면은 타일로 마감하여 벽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가 쉽도록 한다.
- · 조리대와 가열대는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높이로 계획하여 냄비를 올리고 내릴 때 사용의 편의를 고려한다.
- ㆍ싱크대 앞쪽 모서리는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두리를 높게 처리하거나 싱크대 물막이를 설치한다.
- ㆍ 오븐이나 냉장고와 같이 키가 큰 유닛은 작업대의 가장자리에 배치하여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바닥면에서 250mm 높이로 굽도리를 설치하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쪽으로 깊게 계획한다.
- · 작업대, 싱크대 하부는 700mm 높이, 600mm 깊이, 800mm 폭의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 때 하단부에 파이프나 케이블 등이 닿지 않도록 한다.
- · 오븐,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여 문을 열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측면에 700mm 높이, 600mm 깊이, 800mm의 여유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구 및 수납공간

- · 주방 내에 식탁을 놓을 경우 테이블의 최소 두 면 이상은 1200mm 의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1500-1800mm의 회전반경을 확보한다.
- ·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부가 보이는 개방형 상부장을 설치한다.
- · 그릇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상부장은 하향 리프트 선반을 설치한다.
- · 작업대에서 450mm 높은 곳에 설치된 상부장은 폭이 좁은 장을 계획하거나 선반을 아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풀다운(pull-down) 방식을 적용한다.
- · 하부 수납장은 인출식 하부장으로 계획한다.
- · 다양한 주방용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용도 걸이대를 마련한다.
- · 코너에 위치한 찬장은 내용물을 쉽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전식 선반을 설치한다.
- ㆍ 찬장 문은 135도 이상 열리도록 힌지를 조절하여 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고 넣을 때 편리하도록 배려한다.
- · 손잡이는 쥐기 쉽고 사용이 편리한 D자형 핸들을 설치한다.
- ㆍ핸들은 잡고 사용하기 편하고 사용자의 손 크기와 힘의 정도를 고려해서 선택한다. 서랍과 찬장 에는 D자형 핸들을 대비되는 색채로 적용하고, 손에 쥐기 쉽도록 100mm 이상 길이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 여닫이문에는 수직방향으로 손잡이를 설치하고, 앞으로 당기고 미는 형태의 서랍은 수평 방향으로 손잡이를 설치한다.







인출식 선반이 설치된 하부장

콘센트, 스위치, 컨트롤

- · 모든 컨트롤은 눈에 명확하게 띄고 단순하며 한 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쉽게 계획되어야 한다.
- ·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는 컨트롤 패널이 바닥면에서 750-1050mm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1200mm 높이는 넘기지 않는다.)
- · 가열대 위 후드 컨트롤은 모든 사용자가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위치해야 하며, 필요시 리모트 컨트롤을 제공한다.
- · 스위치와 소켓은 명확하게 눈에 띄고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 작업대 앞쪽에 스위치와 소켓을 배치한다.

주방가전

- ㆍ전기레인지는 사용 후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도 한동안 뜨겁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시각 및 청각적 경고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 · 전자레인지(바닥 기준)는 바닥면에서 최대 900mm 높이를 넘기지 않도록 설치하고 컨트롤 패널은 1150mm 높이를 넘기지 않는다.
- · 전자레인지 문은 각도가 100도 이상 충분히 열릴 수 있도록 측면의 여유공간을 고려한다.

재료와 마감

- ㆍ바닥 마감재는 향후 부엌 가전과 가구의 재배치 등을 고려하여 부엌장과 카운터 앞에서 끊지 않고, 카운터 바닥면까지 연결하여 설치한다.
- · 가전과 수납장 하단부에도 바닥마감재를 확장하여 설치한다.
- · 바닥마감재는 미끄럼방지와 청소(오염제거)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한다.

2 공용공간



가정과 같은 따뜻하고 친숙한 분위기를 강조한 공용공간

기본 원칙

- 연관되는 활동 및 프로그램실을 근접 배치하고 중간에 공용 공간을 계획한다.
- · 공간의 용도에 따라 자연채광과 환기, 외부공간과의 연계, 조망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 · 공용공간은 이용자 및 보호자의 대기 및 휴게, 전시·정보교류 등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일반

- 연관되는 활동 및 프로그램실을 근접 배치하여 공용의 공간을 구성한다.
- · 공간의 용도에 따라 자연채광과 환기, 외부공간과의 연계, 조망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 · 기능 및 활동 프로그램에 따라 시각, 청각, 후각 측면에서 공간의 접근과 분리를 면밀하게 검토· 계획한다.
- · 기능의 복합에 따라 소규모 단위의 프로그램실을 두고 중간에는 공용영역을 구성한다.
- · 공용공간은 이용자 및 보호자의 대기실 및 휴게실로 구성하며, 전시·정보교류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다.
- · 공용공간 전면에는 테라스나 데크 등을 설치하여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

프로그램실

기본 원칙

- · 각 기능별 공간의 특성에 맞게 충분한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이동 및 운반이 편리한 의자와 테이블을 제공한다.
- · 내외부 공간의 확장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공간을 계획한다.

일바

- · 여가기능(경로당, 프로그램실), 생활기능(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재가지원기능(주간보호, 단기체류, 방문서비스 등) 등이 지역적 수요에 따라 조정되어 배치되므로 유사기능의 연계 및 공동 이용공간의 확보와 독립성이 요구된다.
- ㆍ 가급적 연관되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근접 배치하여 공용의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 · 공간의 용도에 따라 자연채광과 환기, 실외공간과의 연계, 조망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 ㆍ기능 및 활동프로그램에 따라 시각, 청각, 후각 측면에서 공간의 접근과 분리를 면밀하게 검토, 계획해야 한다.
- ㆍ관리운영이 용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을 지나치게 작게 구획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폐쇄적이지 않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 ㆍ 프로그램의 변동 시 공간의 재구성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공간을 계획하고 가변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 ㆍ 이동식 칸막이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유연한 공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공간 규모 변경)
- ㆍ이용자들의 사용빈도, 이용률, 신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접근에 유리하고 단거리 이동이 되도록 계획한다.
- ·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여러 명이 동시에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
- ·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실은 방음 성능이 우수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 · 이용자가 많은 프로그램실은 환기에 유의한다.

가구 및 수납

- · 프로그램에 따라 이동이 잦은 경우를 고려하여 이동·운반이 편리한 의자와 테이블을 마련한다.
- · 치유 혹은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므로 프로그램실 주변에는 대기 및 휴식을 위한 벤치를 설치한다.
- · 우산이나 휠체어 등의 수납공간, 벤치, 손잡이 등을 설치한다.
- · 다양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를 설치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계획한다.
- · 필요한 기기 및 가구를 수납할 수 있는 창고를 계획한다.
- ·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 등을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공간의 연계

- ㆍ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각 기능별(여가, 생활, 재가기능)로 사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조로운 실내공간만이 아닌 내·외부공간의 연계를 통해 그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한다.
- · 확장된 외부공간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옥상녹화를 통해 단조로운 실내공간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 · 전시, 장터, 공연 등 다양한 지역 문화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홀·광장과 같은 열린공간을 조성 한다.
- ㆍ 외부 통로를 통한 프로그램실이나 강당의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개방을 도모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이 가능한 배치를 위해 이동 가능한 가구와 건강체크, 인지강화요소를 적용한 안정적인 공간

4 생활실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강조한 소규모의 거실

기본 원칙

- · 공간 계획시 다양한 용도로의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계획한다.
- ·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안전손잡이를 제공한다.
- ·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가구와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일반

- · 현관(출입구)과 동일한 층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객을 응대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휠체어나 보행보조기의 이용을 고려하여 바닥에 단차를 제거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 · 거실에서 각 실로 바닥마감은 연속적으로 단차없이 평탄하게 마감한다.
- · 공간 계획시 단순하게 거실과 주방, 화장실로만 나누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의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계획한다.
- · 좌식생활이 가능하도록 바닥 난방을 설치한다.

- · 좌식용 마루를 설치할 경우, 이용자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 계단과 수직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 이용자가 앉거나 일어설 때 안전하게 신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다기능 손잡이를 적용한다.
- · 다목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유연하게 계획한다.
- ·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외에서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화단을 조성한다.
- · 남성의 비율이 갈수로 줄어들고 있어 할아버지방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간의 용도 변경이나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형태, 접근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계획한다.
- ·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은 원칙적으로 분리 계획하고, 원룸으로 계획 시 가변형 벽체를 계획한다.
- · 착석, 선반 접근, TV시청, 창문과 문 열고 닫기 등 다양한 행위를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고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한다.
- · 1500-1800mm의 회전공간을 확보하여 휠체어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 가구, 벽, 창문, 문 사이의 거리는 750mm의 폭을 확보하여 사용자가 지나다니거나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 주변에 보행보조기구를 놓아둘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 · 프로그램 진행 시 방음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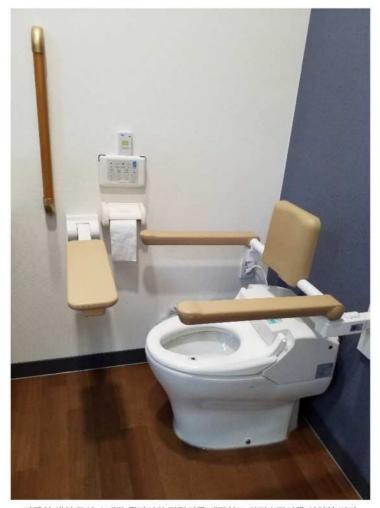
조명과 채광

- · 펜던트 조명 등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조명 설비를 제공한다.
- · 자연채광 확보를 위해 창문은 충분히 높게 설계하고,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채광이 확보될 수 있도록 창문을 계획한다.
- · 외부와의 소통, 채광, 환기, 단열을 고려한 눈높이에 맞는 넓은 창문을 설치한다.

가구 및 수납

- · 일반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가구를 배치한다.
- · 붙박이장이나 선반장 등 충분한 수납공간을 계획하여 정리되도록 한다.
- · 할아버지방의 경우 장기나 바둑 등과 같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소파와 테이블을 제공한다.
- · 다양한 활동에 따라 공간 활용이 가능한 모듈소파를 적용한다.
- · 주변에 보행보조기구를 놓아둘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 · 가벼운 소재의 물품 보관 바구니를 소파 하부에 배치하여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 이동식 협탁을 제공한다.
- ·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으며, 지팡이 등을 걸칠 수 있는 의자로 계획한다.
- · 담소, 휴식, 독서 등을 지원하는 등받이쿠션, 조명을 적용한다.

5 화장실



따뜻한 색의 쿠션 소재로 등받이와 팔걸이를 제작하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한 변기

기본 원칙

- · 시설적인 분위기를 최소화하고, 밝고 기분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명, 마감재를 따뜻한 계열의 색채와 소재로 선택한다.
- · 요소들 간의 시각적 대비, 안전손잡이 설치, 안내사인 부착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다.
- · 이용자의 접근과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 및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일반

- · 화장실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가급적 생활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 배변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cdot 출입구(현관)가 있는 층에 최소 1500X1800mm의 화장실 공간을 확보한다. 휠체어 사용자 및 샤워 기능을 겸하기 위해서는 1800X2000mm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 화장실 문은 내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가 내부에서 쓰러졌을 때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화장실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문이 열리도록 계획하되, 문을 열다가 다른 사용자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벽쪽으로 문이 열리도록 설계한다.
- · 화장실 문은 사용여부를 알 수 있고,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위급 시 밖에서도 열 수 있어야 한다.
- · 가벼운 소재의 경량 출입문에 반 투시창을 적용한다.

색채와 마감

- · 가정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의 색채와 마감재로 계획한다.
- · 바닥, 벽, 설비간의 시각적 대비를 통해 사용자가 공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향후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닥에 배수구를 계획하고 바닥면을 단차없이 평탄하게 마감 한다. 단,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경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 · 천장 마감재(석고보드)와 조명설비는 방수 기능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정한다.
- · 바닥에 미끄럼방지 마감 또는 소재를 적용한다.



화장실 남.녀 픽토그램



휠체어사용이 가능한 화장실



간단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의자와 샤워기 설치



따뜻한 색의 쿠션 소재로 등받이와 팔걸이를 제작하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한 변기

세면대

- · 바닥에서 750-800mm 높이에 세면대를 설치한다.
- · 세면대 앞에는 1100X700mm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 · 세면대는 하단에 기둥식 받침대(pedestal)가 있는 제품은 사용자의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며, 세면대 하단부는 최소 600mm 이상의 무릎공간을 확보한다.
- · 세면대를 포함하고 변기까지 일자형으로 연결된 욕실 카운터는 물품 보관 및 수납, 신체 지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유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 · 세면대 하단의 하수 파이프는 사용자의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납장 등으로 가릴 경우 사용자의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단부의 접근공간(600mm 깊이)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 계획 하다.
- · 건식 세면대를 설치한다.
- · 세면대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화장실 내부에 코너 세면대를 설치한다.
- · 수전은 레버식 혹은 센서식으로 설치하며, 냉온수의 구별이 알기 쉽도록 하고, 온도고정장치를 설치한다.
- · 수전 상단에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변기

- · 변기는 변기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에서 최소 400-500mm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 변기 앞에는 1100X700mm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 · 변기의 물내림 버튼은 노약자와 장애인, 어린이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름식이 아닌 레버식 핸들로 제공한다.
- · 변기의 레버 핸들은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벽과 가까운 쪽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 변기 주변에는 지팡이를 걸쳐놓을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한다.







좌) 물 온도를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수전 우) 소변기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 바닥의 발 위 치 표시 사인

샤워기

- · 필요한 곳에 안전손잡이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벽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경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벽체 구조를 설계한다.
- · 수전의 핸들은 한 손으로 충분히 조작할 수 있도록 레버식으로 설치하고,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방향과 물의 양 조절 방향을 명확하게 표기한다.
- · 거울은 바닥면에서 800-2100mm 높이에 설치하고 가능한 열선거울을 적용한다.
- · 비누, 샴푸, 치약, 칫솔 등의 물품에 사용자가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선반 위치를 고려한다.
- · 다양한 위생용품의 수납을 위한 찬장이나 선반을 욕실 내에 계획한다.
- · 수전은 배경면과 시각적으로 대비가 뚜렷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 욕조와 세면대의 모서리는 색이 있는 타일을 사용하여 경계면을 구분하고, 변기 좌석에 색을 적용하거나, 바닥면과 벽을 대비되는 색으로 적용하여 시각적 대비를 이룰 수 있다.
- · 욕실내 옷걸이는 바닥면에서 1100mm 또는 1700mm 높이로 계획한다.
- · 샤워기는 자동온도조절기능을 가진 제품을 적용한다.

안전손잡이

- · 화장실 내부 벽면은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을 고려하여 충분히 튼튼하고 시공에 문제가 없는 재료와 소재를 적용한다.
- · 사용자의 신체지지를 위해 안전손잡이를 제공하고, 화장실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계획한다.
- · 이동 구간은 연속적이며 따뜻한 소재의 수평형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 문 손잡이 옆 벽면에 수직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때는 시설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 따뜻한 색과 재료를 사용한다.

안내사인

- · 출입문에 색상, 픽토그램을 적용한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 · 눈높이를 고려하고 성별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안내사인을 크게 부착한다.
- · 냉온수 구별이 용이한 냉온사인을 적용한다. (큰 고딕체, 직관적 인지 가능한 그림 표식과 색채, 내구성 우수한 인쇄 방식)

가구 및 수납

- · 휴지보관함(좌변기에서 손이 닿는 위치, 지면에서부터 400mm 높이 설치)을 제공한다.
- · 옷과 가방을 걸 수 있는 다용도 옷걸이(지면에서부터 1300mm 높이)를 설치한다.
- · 수건걸이(세면대에서 400mm 이상 띄워서 설치), 수건보관함을 설치한다.

조명/환기/온도

- · 잦은 물 사용이 이루어지는 욕실 내의 조명은 안전을 위해 IP(방진방수) 44 등급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1m 이내에 물이 튈 수 있는 곳은 이 제품을 반드시 설치한다.
- · 바닥난방을 시공하여 샤워 후 바닥면이 빠르게 건조될 수 있도록 한다. 바닥난방은 욕실 개별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스위치를 제공한다.
- · 열선이 들어간 수건걸이를 설치하여 욕실을 따뜻하게 하는 동시에 젖은 수건을 빨리 말릴 수 있도록 한다.
- · 사용자가 오랜 시간 욕실을 이용할 경우 젖은 상태에서 몸이 차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난방기구나 시스템을 제공한다.
- · 눈부심이 적은 300lux의 작업조명을 설치한다.
- · 세면대와 샤워기 위에 눈부심이 적고 방수 기능을 가진 작업 조명을 설치하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위치를 고려한다.
- · 물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팬이나 환기 시스템을 설치한다.
- · 라디에이터를 설치할 경우 표면에 화상방지용 덮개를 부착하고, 사용자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배치한다.
- ㆍ모든 열선과 수도관은 사용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커버를 씌우되, 수리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알아두세요!

· IP등급 – 전자제품의 외피에 대해 손과 손가락, 먼지, 돌발적인 접촉, 수분에 대항하여 제공 되는 보호 등급으로, 44 등급은 전방향으로 비산되는 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가능한 정도 에 해당한다



6 특화 공간

1.	특화 공간	 10	
2.	치유 공간	 11	

1 특화 공간

기본 원칙

- · 이용자의 안전한 공간 이용을 위해 화재감지기 및 관련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용품을 충분히 비치 및 수납하고, 필요시 공간의 분리 및 기능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구조를 설계한다.

대피 및 방재

- ·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이 통합된 형태의 소방 방재 시스템을 설치한다.
- · 소화기, 비상 조명등, 스프레이 소화기, 소방 담요 등의 사용법은 눈에 띄는 색상의 큰 글자로 표기한다.
- ·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지기 설치 및 정기적 점검을 진행한다.
- · 화재감지기는 천장 설치시 벽면으로부터 600mm 이상 떨어진 곳, 환풍기/에어컨/선풍기/ 난방기로부터 1500-2000m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 화재감지기는 벽면 설치시 천장으로부터 600m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전기밥솥/조리기구 상단은 피해서 설치한다. 또한, 욕실이나 수증기 발생하는 곳은 피해서 설치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 화장실 개수대는 비수동식 수도꼭지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 화장실 내에 손세척제, 휴지, 종이타월 등의 물품을 비치할 공간 및 여유분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 · 시설 내 밀폐된 곳은 주기적인 환기와 공기정화 시스템을 통해 환기와 통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 감염병 의심환자가 일시적으로 대기 가능한 임시 격리공간을 확보한다.
- · 이 때, 격리공간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문을 닫아서 공간을 분리할 수 있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계획한다.
- · 감염병으로 인해 실내 휴게실, 다기능활동공간 등 다중이용공간을 일시 폐쇄할 경우, 다른 용도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의 전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간의 구조와 규모를 계획한다.
- ·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비치공간과 수납공간을 계획한다.
- · 감염병으로 인한 시설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대면, 비대면으로 전환이 쉬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하고 야외에 거리두기 공간을 계획한다.

2 치유 공간



이웃주민,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야외공간

기본 원칙

- ·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계획한다.
- ·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치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마감재를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내외부 공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일반

- · 정원, 중정, 온실 등은 이용자들에게 자연을 제공함과 함께 비상시에는 피난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 조망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주된 활동공간이나 휴게 및 담화를 위한 공용공간을 배치하도 록 한다.
- · 공용공간 전면에는 테라스나 데크 등을 설치하여,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고려한다.
- · 전시, 장터, 공연 등 다양한 지역 문화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홀, 광장, 정원, 카페, 식당 등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 · 갤러리 로비나 커뮤니티 카페 등을 지역에 개방한다.
- · 각 기능별(여가, 생활, 재가기능)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장가능한 홀 및 내외부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치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단조로운 실내공간만이 아닌 내외부공간을 연계하여 그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한다. 확장된 외부공간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옥상녹화를 통해 단조로운 실내공간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화다

- · 화단은 현관(출입구)이 있는 층에서 문을 열고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계획하되, 800-850mm의 유효폭을 지닌 문과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한 입구로 설계한다.
- · 화단에 식물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선정한다. 예를 들어, 바람에 따라 나뭇잎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식물, 향이 강한 식물, 새나 벌레가 모여드는 꽃, 작은 분수 또는 바람에 흔들려 소리가 나는 풍경 등으로 다양한 소리와 향을 지닌 식물 위주로 선택한다. 또한, 색이 다양한 꽃, 바람에 의한 잎사귀의 움직이는 형태, 식물의 질감, 거울과 물을 이용한 반사 등 시각 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식물과 향이 강한 식물 등을 선택한다.
- · 화단 주변의 보행로는 900-1200mm의 폭으로 바닥에 단차없이 평탄하게 마감하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우수한 재료를 선택한다.
- · 강한 햇빛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파고라(pergola), 캐노피 등의 그늘막을 설치한다.
- · 휠체어 사용자가 조경 감상 및 원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식물은 바닥면에서 300-750mm 높이로 돋음판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가능한 주변에 사용자가 잠시 앉을 수 있는 좌석공간을 돋음판의 양 측면에 제공한다. 이 때 나머지 두 면은 휠체어로 식물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좌석을 설치하지 않는다.
- · 식물 돋음판을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큰 화분에 식재한 식물로 대체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 · 정원은 지역사회와의 융합이라는 의미로, 지역에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계획하고, 부지에 여유가 있다면 시설과 분리하여 정원에 카페 등을 배치한다.
- · 감염병으로 시설 내 입장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가 야외에서 휴식 및 이웃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야외공간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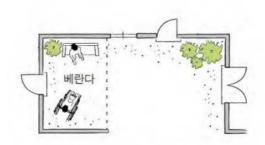
창가와 보행로에 인접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인 화단

발코니/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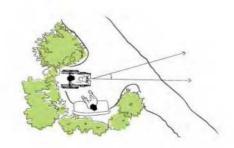
- · 이용자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개별 정원 또는 발코니/테라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 발코니와 테라스는 단차없이 평탄하게 마감하고 최소 1500-1800mm의 깊이를 확보한다.
- · 1인당 최소 5㎡의 공간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수에 따라 2㎡씩 증가하여 총 면적을 계획한다. (예, 2인 공간은 7㎡, 3인 공간은 9㎡)
- ·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발코니로 나가기 전에 미리 불을 켜고 끌 수 있도록 실 내부 출입구 근처에 스위치를 설치한다.
- · 이웃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한다.
- · 바닥면은 미끄럼방지 기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마감하고, 바닥에 배수구를 설치한다.
- ·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난간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안전손잡이는 겨울철 사용시 차가운 온도를 고려하여 목재나 코팅된 금속재를 사용한다.
- ·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1500mm의 회전반경을 확보한다.
- ·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리패널을 설치한다.
- · 자연채광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통유리창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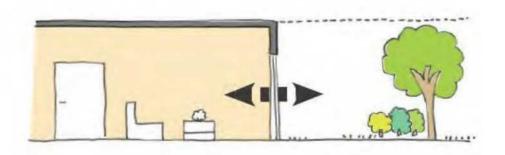
실내에서 바라 볼 수있고 걸어다니며 직접 만지고 교감할 수 있는 옥외정원



2~3개의 공간에서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캐노피와 의자를 두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정원이나 실외놀이터에는 편안한 벤치가 있는 아늑한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외공간을 제공함



내외부 공간의 연계를 통해 자연과의 교류를 강조한 형태



이용자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된 화단

서울시 인지건강 가이드북(실내환경)



서울시 인지건강 가이드북(실외환경)



부록

1.	관련 법규 및 규정	11	8
2.	참고사례 및 인터뷰	14	0
2	체크리스트	1 <i>A</i> ′	7

1 관련 법규 및 규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관련)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유효 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 이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이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 미터마다 1.5 미터 $\times 1.5$ 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 미터 $ imes 1.5$ 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 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 분의 1 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경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 2 호 하목 (1) 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 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3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턱 낮추기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1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 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유효폭	
1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and the second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손잡이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병원급 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 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 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성 확보		
1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유효폭
1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 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 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7.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 미터 $ imes 1.4$ 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크기	
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용자 조작 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 미터 이상 1.2 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 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 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이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 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 바닥면적이 1.4 미터 $\times 1.4$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 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 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 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디딤판		
1	휠체어 이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 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9. 휠체어 리프트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 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수 있는 설비를 1.4 미터 $ imes 1.4$ 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 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 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 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 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손잡이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경사로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중축·개축·재축·이잔·대수선 모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 기상시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혼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혼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의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여러울 것 (다)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담판과 챌면 1 설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격우스답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나로 설치할 수 있다. 소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소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소집에 및 점차표지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소립에 및 변화적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터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철체어의 백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사업을 보는 있는 및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유효폭 및 활동공간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보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 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대담판과 챌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참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재질과 마감 1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1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3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7월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 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FIH판과 챌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한국의 릴심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1 검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순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순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1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3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 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한 소합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울기	
2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 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 하기가 어려울 것	
1 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디딤판과 챌면	
2 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재질과 마감 1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1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재질과 마감 1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2	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재질과 마감 1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재질과 마감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2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재질과 마감 1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재질과 마감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2		
1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재질과 마감	
	1		

1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1) 일반사항

	설치장소
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재질과 마감
1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2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
1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 표시와 함께 음성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	(2) 112-1		
	활동공간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 미터 이상, 깊이 2.0 미터 이상이 되도록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 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수 있도록 1.4 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구조		
1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 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2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손잡이		
1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 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 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3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5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수 있다.		

	기타설비	
1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 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 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변기

	기타설비	
1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손잡이	
1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 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면대

	구조	
1	휠체어 이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손잡이 및 기타 설비	
1	목발이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휠체어 이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 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 할 수 있다.	

1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설치장소	
1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닥	
1	욕실의 바닥면 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손잡이	
1	욕조 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4	욕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장소
1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 미터 $\times 0.9$ 미터 또는 0.75 미터 $\times 1.3$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손잡이
1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 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점자블록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 미터 $\times 0.3$ 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5.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설비

비상경보등·피난구 유도등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16.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 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 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음성안내장치	
1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기타 유도 신호장치	
1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활동공간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설치장소
1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 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구조
1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객실 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 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닥
1	객실 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기타설비
1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객실 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가목(2)(가) \cdot (3)(나), 나목(1)부터 (3)까지 \cdot (4)(가), 라목 및 제14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 등에는 건축물 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설치장소					
1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 하여야 한다.				
4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영화관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거리일 경우에 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6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 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닥					
1	열람석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4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활동공간				
1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기타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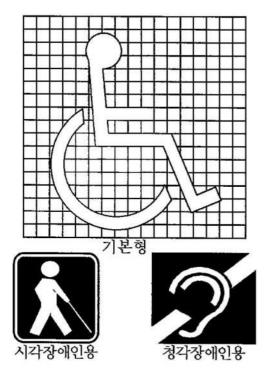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설치장소					
1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이용자 조작 설비					
1	동전 또는 전화카드 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기타설비						
1	지팡이 및 목발이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편의시설의 안내표지기준 (제3조)

	안내 표지 기준				
1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5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작도법



출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 준',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 류 및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665호, 2019. 10. 24 시행)

1. 안전 및 대피

	직통계단
1	3층 이상의 층으로 해당 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한다.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한다.
	방화구획
1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2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이내마다 구획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이내마다 구획한다.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소화기구			
1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				
1	연면적 3,000㎡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 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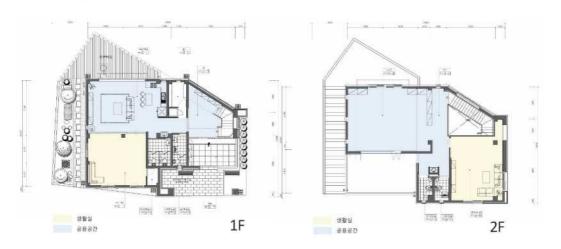
	스프링클러
1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타설비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2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 이상					
3	누전경보기 : 계약전류용량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시설					
4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400㎡ 이상					
5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 500 ㎡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6	시각경보기 : 연면적 400㎡ 이상					
7	가스누설경보기 : 모든 시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 모든 층 (피난층, 지상1, 2층, 11층 이상은 제외)					
2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 모든 시설					
3	비상조명등 :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연면적 5,000 ㎡ 이상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	연결송수관설비 :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 이상					
3	연결살수설비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 ㎡ 이상					

2 참고사례 및 인터뷰

○ ○ 경로당 (마포구 염리동)



Q. 경로당의 주된 이용자는 누구이며, 이들을 위한 공간 계획시 고려해야 할 요구사 항은 무엇인가요?

A.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모임, 교류, 프로그램 활동, 건강관리 등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주된 이용자는 70-9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대가다양하며, 남성 이용자보다는 여성 이용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간 활용이 이루어집니다. 성별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방을 계획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층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남성 이용자의 활동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서 여성 이용자의 공간을 중심으로 식사 및 담소의 기능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곳도 많습니다.

보행보조기,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문에서부터 건물 현관 앞까지 보행에 장애가 없도록 안전하고 매끄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외 공간에서 신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안전손잡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이며, 명확하게 공간 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벽, 바닥, 문, 손잡이 등의 요소간에 시각적 대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체력의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 위해 동선을 명료하고 단순하게 계획하며, 거실 공간 내에서 식사, 요리, 담소, 프로그램 활동, 건강 관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연하게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좌식 또는 입식의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유형의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 경로당 (동대문구 전농동)



Q. 노인 이용자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나요?

A. 경로당은 대부분의 경우 거실(사랑방), 화장실, 주방 등 공간구성이 매우 단순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노인 이용자가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하여 마감재, 색채, 구조와 기능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눈부심과 광택을 최소화해야 하며, 벽면은 과도한 색채나 패턴을 없애고 바닥면과 명확하게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손잡이는 끊어짐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하되,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시각적 대비를 명확하게 주어야 하며, 현관이나 화장실 등에서는 앉았다가 일어설 때신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 손잡이를 필요한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구는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형태로 선택하고, 다양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가구의 계획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납공간 계획시 현관 입구 주변의 휠체어, 보행보조기 보관 장소를 포함해야 하며, 물건이 바닥에 나와 있어서 보행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소파와 결합된 수납장, 신발을 갈아신을 때 필요한 좌석과 결합된 신발장 등 다양한 유형의 수납가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점심식사를 함께 만들어서 드시기 때문에 주방은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수납장에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위치와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출식 장, 하향 리프트 선반 등 다양한 방식의 편리한 수납가구가 적용되고 있으며, 조리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과 설비가 집약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체크리스트

[기본]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한다.	평	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물리적 장애와 단차,돌출물 모서리 등의 위험 요소를 제거 하였다. 	0	х		
2. 비상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0	X		
3. 자연채광과 조명이 적절히 계획되어있다.	0	X		
시설적 느낌을 최소화한다				
4. 소규모로 공간구획하여 인간적 공간 스케일에 맞게 계획되어 있다.	0	Х		
5.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와 개방된 열린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6. 획일성을 배제하고 각 프로그램실 특징에 따라 마감재를 다양하게 선택 하여 차별하를 두어 계획하였다.	0	Х		
사용자를 고려한 지원환경을 제공한다.				
7. 공간에 맞는 마감재,색채,조명을 사용하여 좋은 자극을 주고 있다.	0	X		
8.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	Х		
9. 이용자가 알기 쉬운 사인시스템과 설비,비품 등이 예측 가능한 위치와 구조로 계획 되어있다.	0	Х		
지역연계 및 교류를 확대한다.				
10.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연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0	Х		
11. 지역에 개방된 휴게공간,간이식당을 설치하고,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계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0	Х		
12. 시설느낌이 아니라 지역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하였다.	0	Х		

[공간구성]

시설구성과 공간계획				
1. 경로당의 소요공간 및 구성이 기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0	Х		
시설적 느낌을 최소화한다				
2.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공동공간 확보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다.	0	Х		
3. 이용자 특성에 따라 공동공간과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계획하였다.	o	х		
4. 내.외부가 연결되는 공간에 창을 두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움직임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하고 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환경				
5. 자연채광이 좋은 곳에 활동 공간이 배치되어 있으며, 면역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친환경소재의 마감 재료를 사용하였다.	0	х		
6. 눈이 부시지 않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은 밝은 조명사용과 자연채광이 양호한 곳으로 배치되어 있다.	0	х		
7. 공간정보 및 명시성을 높일 수 있는 마감재 와 컬러를 사용하여 계획하였다.	0	х		
합리적 동선 및 공간계획				
8. 독립공간의 확보와 공동공간의 이용이 효율적이다.	O	Х		
9. 시설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보관하는 공간과 다양한 수납공간을 확보 하였다.	О	х		
10. 운영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공간을 배치하였다.	О	х		

[세부공간]

진입공간	평	가		
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단차와 기울기가 없는 평탄한 진입로이다.	0	Х		
2. 출입구는 여유 있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다.	0	Х		
생활공간				
3. 일반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계획되어있다.	0	Х		
4. 주변에 보행보조기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0	Х		
5. 채광이 좋은 위치에 배치하였다.				
6. 주방은 사용자를 고려하여 싱크대와 작업대를 마련하였다.				
7. 사용자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턱을 제거하고 단차를 완화하였다.				
위생공간				
8. 화장실 안내사인은 눈에 잘 띄고 찾기 쉽다.	0	Х		
9.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였다.	0	Х		
10. 미끄럼방지 가능한 바닥으로 마감을 적용하였다.	0	Х		
11. 거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다.	0	X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Seoul Welfare Facility Universal Design Guideline

참고자료

-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10 시행)
-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제32조, 제34조, 제26조, 제38조, 제39조의 5, 제39조의 19 (2019.01 개정)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2019.09 개정)
 -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제26조 제1항 관련)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2018.02 개정)
 -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 편의시설의 안내표지기준(제3조 관련)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 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5판), (2020)
- · 서울시,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 (2020)
-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로당 (2011)
- · 서울시, 인지건강 시설환경 가이드북 (2017)
- · 박영순, 이현주, 이명은 (2007), Color Design Project 14, 교문사
- · Ireland, NDA, Center for Excellence in Universal Design, Building for Everyone: A Universal Design Approach (2012)
- · Ireland, NDA, Center for Excellence in Universal Design, Universal Design Guidelines for homes. (2015)

ver 2.0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고도화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유연식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유니버설디자인사업팀장 송 한 비 담당자 박병규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미자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공동연구원 김 창 식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 김은정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임 해 원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원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Copyright@ 202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 Reserved.

문의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Tel. 02 2133 2728

